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Study on indirect-cost ratio allocation of National R&D Funding
and Fact Finding investigation of Concentrate Management for R&D Funding)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창조과학부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2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관연구책임자 : 황명구(선임연구위원)

연 구 원 : 김현민(연구위원)

구명희(연구위원)

차두원(연구위원)

양원호(연구원)

김만진(연구원)

곽주연(연구원)

김인직(연구원)

송소현(연구원)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2013.2.11~ 2014.2.10	단계 구분	(해당단계) / (총단계)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조정사업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2013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세부과제명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황명구	해당단계 참여연구원수	총 : 11명 내부 : 5명 외부 : 6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 210,000천 원 기업 : 천 원 계 : 210,000천 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D제도실		참여기업명	-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연구기관명: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한국연구재단		연구책임자: 임석재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 면수	127
<p>□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기관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조사 및 현장 검증, 193개 기관 등급 결정 ○ 실태조사 제도개선 방안 검토 <p>□ 간접비 비율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연), 특정(연), 비영리법인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연) 분야 산출기준 설정 - 출연(연), 특정(연), 비영리법인 49개 기관 산출 ○ 대학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분야 산출기준 설정 - 대학 69개 기관 산출 <p>□ 간접비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연) 분야 세부 산출기준 개선방안 검토 - 대학 분야 세부 산출기준 개선방안 검토 - 참여제한 감률 적용기준 합리적 조정안 검토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통합 방안 검토 등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글	간접비 비율,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영어	Indirect-cost ratio, Fact Finding Investigation of Concentrate Management for R&D Funding			

요 약 문

◆ 과제명: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I. 연구의 배경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 지식기반 경제에서 기초연구와 전문가 양성의 기능을 가진 대학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의 R&D 투자 증가와 함께 대학의 연구비 관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대학의 연구비 관리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현행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간접비 비율 산출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대학의 간접비 비율 산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간접비 비율의 계상기준을 결정하고, 간접비 비율 산출 및 고시 필요

□ 간접비 제도 개선

-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간접비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연구기관, 연구자 모두 간접비 계상 및 사용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 수요 증가

- 적정 간접비 산출 및 현장의 개선 요구에 대한 제도 정비 필요
 - 실태조사와 인증제 통합 및 산출기준 명확화 등으로 행정 부담 경감
 - 연구현장 의견 수렴 등 현실과의 격차 최소화

II. 연구내용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 실태조사 운영절차, 조사항목 및 지표, 주체별 역할 분석 등 2013년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기본계획에 의거 실태조사 수행
-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실시 현황 분석 및 유형별, 연구비 규모별, 조사지표별 등 통계 분석
- 실태조사 관련 국내 연구현장 의견수렴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방문 의견수렴 등
- 해외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사례 분석
- 실태조사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 제안

□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정 및 산출

- 출연(연), 특정(연), 비영리법인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정 및 산출
 - 간접비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정
 - 대상기관의 간접비 비율 산출
 - 교수, 공인회계사, 연구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활용하여 간접비 비율(안) 산출
 - 산출된 실적 간접비 비율(안)에 기관별 가감률을 조정하여 기관별 간접비 비율(안)을 미래창조과학부(간접비산출위원회)에 보고

○ 대학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정 및 산출

- 간접비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정
-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대학 중 대학 신청에 따라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간접비 비율(안) 산출
 - 원가계산에 의한 간접비 비율(안) 산출은 회계법인 위탁수행
- 산출된 실적 간접비 비율(안)에 대학별 가감률을 조정하여 대학별 간접비 비율(안) 산출 및 미래창조과학부(간접비산출위원회) 보고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간접비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별 간접비 비율(안) 최종 확정 및 관보 고시

□ 간접비 제도개선

- 간접비 제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 발굴 개선사항 및 추가사항에 대한 개선안 도출
 - 연구현장의 간접비 제도개선 수요조사에 대한 개선방안 의견 수렴 등
- 연구비관리체계 개선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와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통합 방안 등 검토

Ⅲ. 연구결과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 실태조사 기관별 실시
 - 자체조사 보고서 제출(193개 기관, '12년 대비 2.1% 증가)
- 현장검증(7.15~8.13)
 - 자체 점검한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정확성 및 타당성 제고

- 조사대상: 전년 대비 등급 상승하락 55개 기관, 최근 3년간 실태조사 현장조사 미 실시 136개 기관 두 가지 조건 동시 충족하는 기관 중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 내외인 20개 대상기관 선정

○ 예비등급 안내 및 이의제기(8.19~8.26)

- 2013년도 기관 자체점검 대비 전문기관 예비등급 등급 변동 현황

자체 \ 예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계
A등급	83	21	7	2	113
B등급	-	19	11	5	35
C등급	-	-	8	15	23
D등급	-	-	-	22	22
계	83	40	26	44	193

○ 기관별 최종등급

등 급	A(90점 이상)	B(80~90)	C(80~70)	D(70점 미만)	계
기관수	95*	38	25	40	198

* 연구관리 우수 인증기관 5개 대학(실태조사 면제 및 A등급 부여) 포함

○ 실태조사 제도개선 방안

- 국내 연구현장 의견수렴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간조정: 간접비 비율 산출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서울, 대전 지역 위주의 교육(설명회) 시행 방법 개선을 위해 온라인 동영상 제공 등 개선 필요
- 현행 실태조사 단일 평가항목 소규모 대학 운영여건에 맞게 개선 필요

- 연구관리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컨설팅 풀, 연구기자재 등 공동 자원 활용을 위한 제도 구축 방안 검토 필요
- 해외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벤치마킹
 -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의 경우 Office of Research에서 모든 연구 지원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 공대와 부설 연구소들의 경우 5명의 담당 직원이 연구 제안서 제출 및 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고, 학과 소속 직원 4명이 연구 진행 및 관리(실험 물품 주문 및 영수증 처리, 연구비 정산, 대학원 조교 고용 등)를 지원함
 - 온라인화된 각종 지원 서비스들은 행정의 투명화와 연구비 집행의 착오, 실수 혹은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데 큰 기능을 하고 있음. 연구 지원 조직과 시스템은 연구 참여자들의 “잡무”가 최소화되도록 해서 연구에 투입되는 자금과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실태조사 지표 개선방안 검토
 - 실태조사 지표 2개년 비교분석 결과, 삭제 6건, 강화 6건, 보완 5건의 평가 세부지표개선(안) 구성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통합 방안 검토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유사·중복에 따른 통합 요구 증가
 - 유사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부담 가중 해소 및 양 제도 통합을 통한 연구비관리체계 재정립 필요
 - 개선방안으로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는 폐지하며,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를 출연기관을 포함하여 확대실시하고, 그 결과를 간접비 비율 산출시 반영
 - '14년도 통합 실태조사 시범실시 후 평가지표 등 개선사항 도출, 보완하여 '15년 시행 및 간접비 비율 산출시 반영 추진

□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정 및 산출

○ 출연(연), 특정(연), 비영리법인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정 및 산출

－ 출연(연)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 검토위원 구성·운영

- 간접비산출소위원회 위원 중 공인회계법인 소속위원, 출연(연) 회계전문가로 검토위원을 구성하여 2인 1분과 총 3개 분과로 작업반 운영

－ 산출 대상기관의 간접비 비율 산출

- 간접비 비율 산출 대상기관별 제출자료 서면검토 및 실무검토(8.26~8.30)
- 2013년도 출연(연)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 현황

구분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연구기관	총계
대상기관 수	26	15	13	54
산출기관 수	26	13(△2)	10(△3)	49(△5)

－ 간접비 비율 분야별 산출 현황

구분	기관명	간접비 비율(%)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7.6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1.08
	국가핵융합연구소	16.92
	한국천문연구원	44.8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63
	한국한의학연구원	27.1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9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4.7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9.92
	한국원자력연구원	24.7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7.46
	극지연구소	18.92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7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8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1.54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48
	한국식품연구원	9.4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6.19
	한국기계연구원	8.5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2.79
	한국전기연구원	13.60
	한국화학연구원	18.18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8.21
	재료연구소	5.89
	안전성평가연구소	11.18
	세계김치연구소	40.94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19.3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7.72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34.69
한국원자력의학원		35.6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8.13
한국연구재단		17.0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4.1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92
한국세라믹기술원		20.1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7.53
기초과학연구원		20.84
국기수리과학연구소		18.3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출비대상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출비대상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비영리기관	전자부품연구원	28.44
	자동차부품연구원	28.20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21.34
	(사)고등기술연구원	17.75
	(재)한국파스퇴르연구소	32.32
	한국광기술원	21.28
	삼성서울병원	17.77
	DYETEC연구원(한국염색기술연구소)	17.49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4.70
	한국선급	24.87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산출비대상기관 (공인회계감사미수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출비대상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출비대상기관

- 산출된 실적 간접비 비율(안)에 기관별 가감률을 조정하여 기관별 간접비 비율(안)을 미래창조과학부(간접비산출위원회)에 보고

○ 대학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정 및 산출

- 간접비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정
-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대학 중 대학 신청에 따라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간접비 비율(안) 산출
- 대학 간접비 원가계산 산출 희망대학 접수(69개 대학 - A등급 66, B등급 3, 9.13~9.30) 및 간접비 원가계산 실시(삼일회계법인, 10.28~11.15)

• 간접비 비율 산출대학 현황

구 분	2012년도 고시 대학	2013년도 실태 조사실시대학 (A)	2013년도 간접비 비율 산출(안)			증△감 (E=D-A)
			원가계산 대학 (B)	실태조사 일괄적용 대학 (C)	계 (D=B+C)	
대학수	194	198	69	127	196	△2

* (A)에는 연구비관리우수인증 5개 대학(고려대, 성균관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포함

* (E)는 2013년도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참여기관 중 비대학 2개 기관(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 대학 간접비 비율(안) 심의를 위한 간접비산출 소위원회 2회 개최(11.26, 12.4)

– 산출된 실적 간접비 비율(안)에 대학별 가감률을 조정하여 대학별 간접비 비율(안) 산출 및 미래창조과학부(간접비산출위원회) 보고

• 2013년도 대학 간접비 비율 산출 현황

대 학 명	간접비 비율(%)	대 학 명	간접비 비율(%)
기천대학교	29.35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5
가톨릭대학교	29.75	군산대학교	30.9
강남대학교	10	극동대학교	5
강릉원주대학교	27	금강대학교	15
강원대학교	28.2	금오공과대학교	19.75
건국대학교	27.65	김천대학교	5
건양대학교	15	나사렛대학교	20
경기과학기술대학교	9.9	남부대학교	14.9
경기대학교	26	남서울대학교	15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0	단국대학교	29.9
경남대학교	30.9	대구가톨릭대학교	31
경북대학교	29.9	대구과학대학교	5
경상대학교	29	대구교육대학교	15
경성대학교	31	대구대학교	31
경운대학교	15	대구보건대학교	10

대 학 명	간접비 비율(%)	대 학 명	간접비 비율(%)
경인교육대학교	15	대구한의대학교	30
경인여자대학교	5	대림대학교	5
경일대학교	30	대원대학교	5
경주대학교	10	대전대학교	29
경희대학교	30	대진대학교	20
경희사이버대학교	10	덕성여자대학교	20
계명대학교	31	동국대학교	29,65
계명문화대학	5	동덕여자대학교	15
계원예술대학교	5	동명대학교	20
고려대학교	30,75	동서대학교	20
고려사이버대학교	5	동신대학교	19,9
고신대학교	5	동아대학교	29,75
공주교육대학교	5	동양대학교	15
공주대학교	30,65	동양미래대학교	5
관동대학교	20	동원대학교	5
광운대학교	29,75	동의과학대학교	10
광주교육대학교	15	동의대학교	31
광주대학교	15	명지대학교	24,34
광주여자대학교	15	명지전문대학	10
국민대학교	30	목원대학교	15
국방대학교	5	목포대학교	28,75
목포해양대학교	15	수원대학교	4,34
배재대학교	31	숙명여자대학교	31
백석대학교	9,9	순천대학교	19,50
백석문화대학교	15	순천향대학교	20
부경대학교	29,25	송실대학교	31
부산가톨릭대학교	10	신라대학교	15
부산교육대학교	5	아주대학교	30
부산대학교	28,61	안동대학교	29

대 학 명	간접비 비율(%)	대 학 명	간접비 비율(%)
부산외국어대학교	31	안양대학교	10
부산장신대학교	5	연성대학교	5
부천대학교	5	연세대학교	27.8
북한대학원대학교	10	영남대학교	29
삼육대학교	15	영남이공대학교	14.9
상명대학교	30	영동대학교	5
상지대학교	20	영산대학교	20
서강대학교	29.86	예수대학교	5
서경대학교	14.75	오산대학교	5
서남대학교	10	용인대학교	1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0.75	우석대학교	14.9
서울교육대학교	20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1
서울대학교	28.9	울산대학교	30.86
서울디지털대학교	5	원광대학교	30.9
서울시립대학교	19.9	위덕대학교	10
서울여자대학교	19.9	을지대학교	14.6
서원대학교	15	이화여자대학교	28.9
서일대학교	10	인제대학교	30.75
서정대학교	10	인천대학교	20.96
선문대학교	20	인하공업전문대학	15
성결대학교	5	인하대학교	28.8
성공회대학교	15	장로회신학대학교	10
성균관대학교	32	전남과학대학교	10
성산호대학원대학교	5	전남대학교	32.86
성신여자대학교	20	전남도립대학교	5
세명대학교	20	전북대학교	29.86
세종대학교	27.8	전주교육대학교	5
세한대학교	5	전주대학교	30.55
수성대학교	10	제주대학교	27.6

대 학 명	간접비 비율(%)	대 학 명	간접비 비율(%)
조선대학교	30.75	한국성서대학교	5
중앙대학교	28.15	한국외국어대학교	28.9
증원대학교	5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5
진주교육대학교	5	한국체육대학교	15
차의과학대학교	20	한국항공대학교	29
창원대학교	31	한국해양대학교	29
천안연암대학	5	한남대학교	29
청운대학교	9.9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5
청주교육대학교	15	한동대학교	20
청주대학교	14.9	한라대학교	10
초당대학교	5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0
춘천교육대학교	15	한림대학교	29
충남대학교	30.9	한림성심대학교	10
충북대학교	31.9	한밭대학교	30
침례신학대학교	5	한서대학교	14.9
평택대학교	5	한성대학교	10
포항공과대학교	30.61	한신대학교	15
한경대학교	20	한양대학교	28.5
한국교원대학교	20	한양사이버대학교	15
한국교통대학교	28	한양여자대학교	15
한국국제대학교	10	한일장신대학교	1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	협성대학교	4.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	호남대학교	15
한국복지대학교	5	호서대학교	20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0	홍익대학교	20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간접비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별 간접비 비율(안) 최종 확정 및 관보 고시

□ 간접비 제도개선

- 간접비 제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 발굴 개선사항 및 추가사항에 대한 개선안 도출
- 정부출연(연) 분야 산출기준 개선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산출대상기관 추가 등 산출대상기관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한 검토 추진
 - 출연(연) 분야 사업별 간접비 집행액 배분 기준, 추가소요, 특이사항, 가감사항 등 세부기준에 대한 검토 및 명확화
- 대학 분야 산출기준 개선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인정범위를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 반영 추진
 - 교육수익 산출시 세부기준 검토 및 명확화
- 참여제한 감률 적용기준 개선
 - 기관별 연구비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참여제한 건수별 획일적 감률 적용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선요구와 참여제한 건수가 다수일 경우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의 개선요구 등 참여제한 감률 적용기준 개선 방안 검토 추진
- 연구현장의 간접비 제도개선 요구 및 개선방안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와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통합 방안 등 검토

목 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1. 연구비중양관리실태조사	3
2.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정 및 산출	3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5
1. 연구비중양관리실태조사	5
2.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정 및 산출	5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6
1. 연구비중양관리실태조사	6
2.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정 및 산출	6
제2장 연구비중양관리실태조사	11
제1절 개요	11
1. 추진배경	11
2. 제도개요	13
3.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16
제2절 기관별 실태조사 추진 현황	17
1. 추진 경과	17
2. 자체조사 보고서 접수	17
3. 현장검증	19
4. 예비등급 안내, 이의제기 접수 및 처리	21

5. 기관별 최종등급 통보	23
6. 실태조사 결과 통계	30
제3절 실태조사 제도개선 방안 연구	31
1. 추진배경	31
2. 연구비 관리제도 선행연구 및 제도개선 수요	31
3.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방법	33
4. 국내 연구현장 의견수렴 내용	34
5. 해외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벤치마킹	35
6. 실태조사 개선방안	38
제3장 출연(연)·특정(연)·비영리기관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	47
제1절 추진근거 및 '13년도 간접비 산출기준	47
1. 추진근거	47
2. '13년도 간접비 산출기준	48
제2절 산출방법	53
1. 간접비 비율 산출 추진 절차	53
2. 연구기관의 제출 자료	54
3. 산출 방법	54
4. 간접비 비율 산출 실무검토 세부 일정	55
제3절 간접비 비율 산출 결과	57
제4장 대학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	79
제1절 추진근거 및 '13년도 간접비 산출기준	79
1. 추진근거	79
2. '13년도 간접비 산출기준	80

제2절 산출방법	85
1. 간접비 비율 산출 추진 절차	85
2. 대학의 제출 자료	85
3. 산출 방법	86
4. 간접비 비율 산출 실무검토 세부 일정	86
제3절 간접비 비율 산출 결과	88
제5장 간접비 제도 개선방안	139
제1절 간접비 산출기준 개선방안	139
1. 정부출연(연) 분야 산출기준 개선방안	139
2. 대학 분야 산출기준 개선방안	142
3. 공통기준 참여제한 감률 적용기준 개선방안	145
제2절 연구현장의 간접비 제도개선 요구 및 개선방안	147
1. 간접비 사용용도 및 정산 규정 개선	147
2. 대학-출연(연) 간접비 비율 산정방식 개선	147
3. 기타 사항	148
제6장 결 론	163
제1절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163
제2절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정 및 산출	165
제3절 간접비 제도 개선	166

표 목 차

<표 2-1> 정부 연구개발비 현황 11

<표 2-2> 우리나라 연구개발 예산 현황 12

<표 2-3> 연구비 순위 상위 15개 기관 현황 12

<표 2-4> 실태조사 조사항목 및 조사지표 주요내용 15

<표 2-5> 실태조사 접수기관 유형별 접수 현황 18

<표 2-6> 실태조사 신규참여 기관 현황 18

<표 2-7> 실태조사 권역별 접수 현황 19

<표 2-8> 실태조사 현장점검 대상기관 및 점검일정 20

<표 2-9> 최근 3년간 실태조사 현장점검 대상기관 21

<표 2-10> 자체점검 대비 예비등급 등급 변동 현황 비율 22

<표 2-11> 자체점검 대비 예비등급 등급 변동 현황수 22

<표 2-12> 기관별 최종등급 현황 23

<표 2-13> 연구비 관리제도 관련 정책연구 추진현황 31

<표 2-14> 중앙관리 실태조사 평가지표 개선(안) 39

<표 3-1> 간접비 비율 산출 실무검토 분과별 일정 56

<표 4-1> '13년도 원가계산 희망 대학 간접비 비율 88

<표 4-2> '13년도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등급 적용 대학 간접비 비율 91

그 림 목 차

[그림 1-1] 간접비 비율 산출 추진 체계	8
[그림 2-1] 지표별 최상위/중간/최하위 점수분포 현황	30
[그림 2-2] 기관별 연구비 규모에 따른 등급분포 현황	30
[그림 2-3] 2012~2013년도 등급분포 현황	30
[그림 2-4]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33
[그림 2-5] 미국 과학재단 조직도	36
[그림 2-6] 2012~2013년도 지표별 최상위점 현황	39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 지식기반 경제에서 기초연구와 전문가 양성의 기능을 가진 대학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비 관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대학의 연구비 관리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현행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2.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정 및 산출

- 국가연구개발사업비에서 간접비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연구 및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에서 간접비의 비중 및 중요도도 상승
- 간접비에 대한 관심과 활용의 증가에 비하여 간접비 정비나 제도개선 노력은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간접비 제도의 개선에 대한 수요 증가
- 간접비 관련제도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 목적: 산·학·연 연구주체들의 전반적인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역량 향상으로 국가 R&D 투자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간접비와의 관련: 인증기관에 부여하는 우대조치 중 간접비율을 3% 이내에서 상향해주는 항목이 있고 연구기관은 이 우대조치를 중시

－ 현황: '07년 제도 도입 이후 43개 기관 신청, 19개 기관 인증 받음

※ '13.2월 현재 인증기관은 13개 기관(출연(연) 8, 대학 5)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 목적: 연구비 중앙관리 체제 구축을 통해 자율적인 연구비 관리능력 향상 및 투명성 제고 및 각 연구기관의 간접비율 차등 적용

－ 간접비와의 관련: 등급별로 간접비율을 일괄 배분하고 A, B 등급을 받은 대학은 희망할 경우 원가계산으로 간접비율 산출 가능

－ 현황: '94년 도입 이후 매년 대학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등급 부여

연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계
2009년	73(32.7%)	47(21.1%)	37(16.6%)	66(29.6%)	223개 기관
2010년	72(35.3%)	53(26.0%)	27(13.2%)	52(25.5%)	204개 기관
2011년	78(47.6%)	44(26.8%)	32(19.5%)	10(6.1%)	164개 기관
2012년	77(40.52%)	41(21.58%)	25(13.16%)	47(24.74%)	190개 기관
2013년	83(43.0%)	40(20.7%)	26(13.5%)	44(22.8%)	193개 기관

□ 정부출연(연), 특정(연), 비영리법인, 대학의 간접비율 산출 및 고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간접비 비율의 산출 및 고시 필요

※ 간접비 비율은 간접비 산출 소위원회에서 산출방법을 확정된 후 비율을 산출하되, 그 결과는 간접비 산출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1.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 2013년도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기관별 등급확정
 - 대학의 연구비 관리 실태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수행
 -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현장조사 내실화
- 실태조사 제도개선
 -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운영절차, 조사항목 및 지표, 주체별 역할 분석
 - 실태조사 관련 국내 연구현장 의견수렴 및 해외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벤치마킹 사례 분석
 -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개선 방안 모색

2.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정 및 산출

-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정
 - 출연(연), 특정(연), 비영리법인 분야 및 대학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정
 - 간접비 비율 산출방식, 산출절차 등 산출기준 개선방안 도출
- 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
 - 2013년도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수립 및 적용
 - 간접비율 산출(소)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검토 및 개선(안) 마련
 - 출연(연), 특정(연), 비영리법인, 대학 간접비 비율 산출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 연구방법

- 선행연구 결과 및 관련규정 조사분석 등 문헌연구
- 연구참여자(연구자, 연구관리자 등) 대상 의견수렴
-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 의견수렴을 통한 실태조사 제도 개선방안, 실행전략 마련 등

□ 추진과정 및 역할분담

- 정부부처: 실태조사 기본계획 확정 및 최종등급 확정 발표
- 전문기관: 실태조사 자체조사보고서 접수 및 검토, 현장점검, 예비등급 안내, 이의제기 접수·처리 등
- 연구기관: 자체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2.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정 및 산출

□ 간접비 비율 산출 실무작업반 구성·운영

- 출연(연)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을 위해 간접비 비율 산출 실무작업반 구성·운영
 - 간접비산출소위원회 위원 중 검토위원 구성
 -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공인회계법인 소속위원, 출연(연) 회계전문가로 검토위원을 구성하여 2인 1분과, 총 3개 분과로 실무작업반 운영
 -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산출자료 및 근거자료 누락여부 등 검토

- 제출자료 및 근거자료 등을 통한 간접비 비율 산출내역 검토(필요시 자료 보완 요청) 및 해당 기관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적 간접비 비율(안) 산출

○ 간접비산출소위원회

-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간접비산출위원회)

- ③ 간접비 계상기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비영리법인별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⑪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학계, 연구계, 회계전문가 등 간접비 관련 전문가로 구성
- 분야별 간접비 비율 산출 세부기준 검토 및 보완
- 산출된 기관별 간접비 비율(안) 검토

□ 간접비 비율 산출

- 간접비산출위원회에서 간접비산출 원칙, 기준, 서식 마련과 산출 대상기관 확정 등 간접비 산출계획(안) 수립
-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 기관별 간접비 실사비율 및 가감률 산출, 기관별 의견수렴 및 보완을 수행
-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 산출한 기관별 간접비 산출결과를 간접비산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기관별 간접비 비율 최종확정 및 고시



[그림 1-1] 간접비 비율 산출 추진 체계

제2장

연구비종양관리실태조사



제2장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제1절 개요

1. 추진배경

- 대학의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성과 향상을 위해 정부는 R&D 투자를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그 투자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연구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정부 R&D 투자는 2011년 14조 8,528억 원 → 2012년 16조 244억 원 → 2013년 16조 8,777억 원으로 증가
- 2013년 정부 R&D 예산 규모는 2012년 대비 5.3% 증가

<표 2-1> 정부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교육과학기술부 (미래부+교육부)	43,871	46,981	49,753	52,169
지식경제부	44,385	45,161	47,448	48,101
방위사업청	17,669	20,008	23,210	24,386
중소기업청	5,607	6,288	7,150	7,837
보건복지부	3,085	3,370	3,985	4,341
기상청	489	608	819	940
소방방재청	222	182	263	275
기타*	21,499	25,930	27,616	30,728
합 계	13조 6,827억 원	14조 8,528억 원	16조 244억 원	16조 8,777억 원

* 기타: 경찰청, 공정위, 국과위, 총리실,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 노동부, 농수산식품부, 농진청, 문화재청, 문체부, 방통위, 법무부, 법제처, 산림청, 식약청, 여성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행안부, 환경부 등

- 2011년 우리나라 연구개발 예산은 15,660백만 달러 (ppp\$*로 비교한 해외 선진국과의 연구개발 예산 비교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PPP (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평가지수로서 각국의 물가 차이를 고려한 환율

<표 2-2> 우리나라 연구개발 예산 현황

(단위: 백만 달러(ppp\$))

구분	2008	2009	2010	2011
한국	11,895	13,097	14,409	15,660
미국	144,391	164,292	148,962	144,379
일본	30,560	30,632	31,926	33,529
독일	24,261	26,682	28,389	29,234
프랑스	19,214	20,230	18,829	19,422
영국	14,401	14,745	14,050	13,280

* 출처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3-1

- 국내 대학별 연구비 순위 상위 15개 기관 현황(2011년)은 다음과 같음.

<표 2-3> 연구비 순위 상위 15개 기관 현황

(단위: 백만 원, %)

순위	총 연구비		과학기술분야		인문사회분야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1	서울대학교	507,064	서울대학교	452,472	서울대학교	54,592
2	연세대학교	319,675	연세대학교	296,281	고려대학교	25,377
3	한국과학기술원	228,470	한국과학기술원	221,619	성균관대학교	24,011
4	고려대학교	199,574	포항공과대학교	192,467	연세대학교	23,394
5	포항공과대학교	194,701	고려대학교	174,196	이화여자대학교	21,531
6	성균관대학교	188,589	성균관대학교	164,578	경희대학교	18,366
7	한양대학교	175,466	한양대학교	161,608	중앙대학교	14,076
8	경희대학교	130,312	전북대학교	117,348	한양대학교	13,858
9	전북대학교	124,631	경희대학교	111,946	한국외국어대학교	12,884

순위	총 연구비		과학기술분야		인문사회분야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10	부산대학교	116,005	부산대학교	104,781	전남대학교	11,806
11	이화여자대학교	111,359	경북대학교	100,300	부산대학교	11,224
12	경북대학교	109,778	전남대학교	96,183	단국대학교	10,106
13	전남대학교	107,989	이화여자대학교	89,829	경북대학교	9,478
14	인하대학교	93,351	인하대학교	86,048	서강대학교	9,318
15	중앙대학교	83,123	아주대학교	70,525	동국대학교	8,758
합계	15개교	2,690,087	15개교	2,440,182	15개교	268,777
연구비	420개교	4,895,447	420개교	4,323,002	420개교	572,445
비율(%)*	-	55.0%	-	56.4%	-	47%

* 비율은 420개 대학 대비 15개 대학 연구비의 비율임.

** 2011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기준)

- 대학의 연구비 관리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를 운영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향후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 연구가 요망됨
- 특히, 2013년 신정부출범과 함께 예상되는 정책적 변화에 따라 나타날 연구지원 및 관리 기관의 표준모델을 정립함에 있어 연구비 관리 문제는 핵심 과제이며 연구비 중앙관리실태조사의 개선은 필수적인 관심사임

2. 제도개요

□ 추진목적

- 투명하고 효율적인 연구비 관리를 위해 연구기관의 연구관리 인프라내부통제제도·연구비 집행관리시스템 등을 조사하고, 이를 등급화 하여 간접비 지급률 결정에 활용
 - '09년부터 계속(매년) 시행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조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⑥ 비영리법인은 ...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대학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매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⑦ ... 대학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고 ...

□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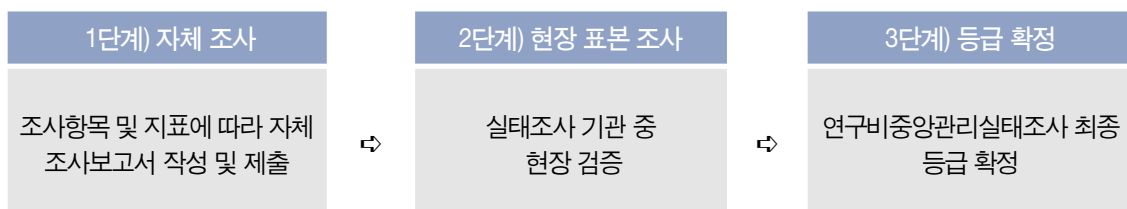
-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 공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통보하여 연구비 중앙관리제 정착
-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현장조사 내실화

□ 실시방법 및 결과처리

- 실시방법: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각 기관으로부터 실태조사 신청을 받아 실시
- 결과처리: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 산출에 적용

□ 추진절차 및 방법

- 단계별 추진내용



□ 조사항목 및 내용

○ 조사항목은 2개 영역, 7개 항목, 14개 지표로 구성

<표 2-4> 실태조사 조사항목 및 조사지표 주요내용

조사영역	조사항목	조사지표	배점
연구관리 인프라 및 내부통제 제도 (55)	1. 전담 조직 설치 및 운영 (18)	1. 연구 관리 전담 조직이 설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6
		2. 연구 관리자를 대상으로 내·외부 연구관련 직무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6
		3.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 시스템이 적절한가?	6
	2. 연구비관리 및 윤리 규정 (12)	4. 연구규정 및 연구비관리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6
		5. 연구자 및 연구 관리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를 구비, 실시하고 있는가?	6
	3. 내부통제 제도(25)	6. 연구비 집행에 대한 사전승인 및 확인 시스템이 적절히 구축운영되고 있는가?	10
		7. 자체감사 규정을 구비, 이에 따라 자체감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적절한가?	15
연구비 관리 시스템 (45)	4.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8. 연구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을 적절하게 구축, 운영하고 있는가?	6
	5. 인건비 및 직접비 집행 (18)	9. 인건비 집행이 적절한가?	6
		10. 기자재 구매 절차 및 관리형태가 적절한가?	6
		11. 여비 및 연구수당 집행이 적절한가?	6
	6. 간접비 집행 (6)	12. 간접비 집행 규정을 구비, 이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가?	6
	7. 회계정보의 신뢰성 (15)	13. 외부로부터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9
		14. 회계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담인력이 있는가?	6
총점			100

□ 등급적용 기준

○ 등급별 간접비 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미참여기관
100점 만점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간접비 비율	20%	15%	10%	5%	3%

※ 등급 및 간접비율은 조사의 안정성을 위하여 작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되, 결과를 고려하여 조정가능

□ 조사결과 활용

- 연구비 중앙관리 등급에 따른 간접비 차등 지원
 - － 일괄지원방식: A등급 20%, B등급 15%, C등급 10%, D등급 5%, 미참여 3%
- 연구비 중앙관리와 간접비 원가계산 방식 연계
 - －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간접비 산정 신청 자격을 연구비 중앙관리 조사 결과에 따라 B등급 이상으로 한정
 - － 중앙관리 조사 등급을 원가계산방식 지급률 결정에 반영
 - － B등급인 경우에는 간접비 지급률에서 3% 감률 적용

3.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 추진과정 및 역할분담

- 정부부처: 실태조사 기본계획 확정 및 최종등급 확정 발표
- 전문기관: 실태조사 자체조사보고서 접수 및 검토, 현장점검, 예비등급 안내, 이의제기 접수·처리 등
- 연구기관: 자체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 기 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간접비산출위원회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된 기관별 간접비 비율 심의

제2절 기관별 실태조사 추진 현황

1. 추진 경과

- 2013년도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기본계획 공고(미래창조과학부, 4.26)
- 2013년도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자체조사보고서 접수(연구재단, ~5.16)
 - ※ 총 193개 기관 참여로 '12년(190개) 대비 참여율 1.6% 상승
 - ※ 신규참여 13개 기관 / 미참여 10개 기관(12년도 참여기관 기준)
 - ※ '전주비전대학교' 조사참여 공문 제출 후 자체조사보고서 미제출로 최종 미참여 처리
- 2013년도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자체조사보고서 검토(연구재단, 5.20~6.28)
- 2013년도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현장표본조사 실시(연구재단, 7.15~8.13/경운대 등 20개 기관)
- 2013년도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예비등급 안내(연구재단, 8.19/가천대 등 193개 기관)
- 2013년도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이의제기 접수/처리(연구재단, 8.19~26/경희 사이버대 등 23개 기관)

2. 자체조사 보고서 접수

□ 보고서 접수

- 대상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 연구비관리 우수 인증기관 3년간 조사 면제
 - ※ A등급 부여: 고려대, 성균관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이상 5개 대학
 - '12년도 실태조사에 참여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등의 기관은 희망시 조사대상에 포함

○ 접수현황: 총 194개

<표 2-5> 실태조사 접수기관 유형별 접수 현황

구분	4년제	2년제	기타	합계
2013년	159	33	2(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194
2012년	152	36	2	190

□ 주요내용

- '13년 194개 기관 참여로 '12년(190개) 대비 참여율 2.1% 상승
 - 신규참여: 14개 기관 / 미참여: 10개 기관(12년도 참여기관 기준)

<표 2-6> 실태조사 신규참여 기관 현황

연번	기관명	구분	권역
1	경운대학교	4년제	대구/경북권
2	고신대학교	4년제	부산/울산/경남권
3	국방대학교	4년제	서울/인천/경기권
4	부산가톨릭대학교	4년제	부산/울산/경남권
5	성산호대학원대학교	2년제	서울/인천/경기권
6	예수대학교	4년제	광주/제주/전라권
7	오산대학교	2년제	서울/인천/경기권
8	전북대학교	4년제	광주/제주/전라권
9	전주비전대학교	2년제	광주/제주/전라권
10	초당대학교	4년제	광주/제주/전라권
1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4년제	서울/인천/경기권
12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2년제	부산/울산/경남권
13	한신대학교	4년제	서울/인천/경기권
14	협성대학교	4년제	서울/인천/경기권

○ 권역별 접수현황

<표 2-7> 실태조사 권역별 접수 현황

구 분	2년제	4년제	기타	합계
광주/제주/전라권	3	24		27
대구/경북권	5	18	1	24
대전/충청/강원권	6	36		42
부산/울산/경남권	2	23		25
서울/인천/경기권	17	58	1	76
합계	33	159	2	194

3. 현장검증

□ 추진목적

- 자체 점검한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정확성 및 타당성 제고
-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내·외 신뢰성 확보

□ 조사대상 및 선정기준

- 조사대상: 실태조사에 참여한 기관 193개 중 20개(10.4%)
- 선정기준
 - － 전년 대비 등급 상승·하락 55개 기관
 - － 최근 3년간 실태조사 현장표본조사 미실시 136개 기관

⇒ 상기 두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기관 중 연구비 규모, 전체 조사일정, 전년과 동일한 조사지표 및 조사등급을 적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 내외(20개) 대상기관 선정

□ 점검방법 및 내용

○ 점검방법

- 점 검 조: 업무 담당자를 포함, 1개조 2명으로 구성
- 구성방법: 담당부서인 연구비정산팀 인원과 필요에 따라 주관부처인 미래창조 과학부 담당관 등으로 구성

○ 점검내용

- 자체점검 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미흡한 내용 및 실제 실행 여부 등을 현장에서 점검

□ 현장점검 대상기관

- 조사일정: 2013. 7. 15(월) ~ 8. 13(화) 18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등 제외)

<표 2-8> 실태조사 현장점검 대상기관 및 점검일정

일자	기관명(소재지)	일자	기관명(소재지)
7.15(월)	경운대(경북 구미시)	7.30(화)	공주대(충남 공주시)
7.16(화)	위덕대(경북 경주시)	7.31(수)	※점검자료 검토/기타업무 처리
7.17(수)	※점검자료 검토/기타업무 처리	8. 1(목)	서일대(서울시 중랑구)
			삼육대(서울시 노원구)
7.18(목)	계명대(대구 달서구)	8. 2(금)	방송통신대(서울시 종로구)
7.19(금)	금오공대(경북 구미시)	8. 5(월)	한경대(경기도 안성시)
7.22(월)	우석대(전북 완주군)	8. 6(화)	서경대(서울시 성북구)
			동덕여대(서울시 성북구)
7.23(화)	전북대(전북 전주시)	8. 7(수)	※점검자료 검토/기타업무 처리
7.24(수)	※점검자료 검토/기타업무 처리	8. 8(목)	산업기술대(경기도 시흥시)
7.25(목)	초당대(전남 무안군)	8. 9(금)	한신대(경기도 오산시)
7.26(금)	서원대(충북 청주시)	8.12(월)	세종대(서울시 광진구)
7.29(월)	청운대(충남 홍성군)	8.13(화)	용인대(경기도 용인시)

□ 최근 3년간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현장점검 대상기관 현황

<표 2-9> 최근 3년간 실태조사 현장점검 대상기관

구분	기관수 (비율)	현장점검 기관명	비고 (전체)
2010년	21개 (10.29%)	건국대, 경상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서대, 동양대, 동의과학대, 명지대, 목포해양대, 상명대, 상지대, 서울교육대, 아주대, 영남대, 인천대, 전남대, 전주대, 충북대, 충주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밭대	204개
2011년	17개 (10.37%)	건국대, 경희대, 대구대, 목포대, 서강대, 성신여대, 아주대, 영남대, 울산과기대, 이화여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동대, 한림대, 호서대	164개
2012년	25개 (13.16%)	가천대, 강남대, 경성대, 경일대, 광운대, 광주여대, 남부대, 남서울대, 대구가톨릭대, 목원대, 목포대, 배재대, 백석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여대, 선문대, 세명대, 순천향대, 신라대, 안양대, 연세대, 을지대, 포항공대	190개

4. 예비등급 안내, 이의제기 접수 및 처리

□ 예비등급 안내

○ 등급기준 및 현황(총괄)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계
100점 만점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간접비율	20%	15%	10%	5%	
기관수(개)	83	40	26	44	193
비율(%)	43.0	20.7	13.5	22.8	100

※ 실태조사 미참여기관 간접비율 3% 적용

※ 등급 및 간접비율은 전년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예비등급 결과

– 2013년도 기관 자체점검 대비 전문기관 예비등급 등급 변동(비율)

<표 2-10> 자체점검 대비 예비등급 등급 변동 현황 비율

구분	자체점검	예비등급	비교
A등급	113(58.5%)	83(43.0%)	30(15.5%) ↓
B등급	35(18.1%)	40(20.7%)	5(2.6%) ↑
C등급	23(11.9%)	26(13.5%)	3(1.5%) ↑
D등급	22(11.4%)	44(22.8%)	22(11.4%) ↑
계	193(100%)	193(100%)	

– 2013년도 기관 자체점검 대비 전문기관 예비등급 등급 변동(기관수)

<표 2-11> 자체점검 대비 예비등급 등급 변동 현황수

자체 \ 예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계
A등급	83	21	7	2	113
B등급	-	19	11	5	35
C등급	-	-	8	15	23
D등급	-	-	-	22	22
계	83	40	26	44	193

○ 2013년도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예비등급 안내(8.19, 193개 기관)

○ 2013년도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이의제기 접수 및 처리(8.19~26/경희사이버대 등 23개 기관)

5. 기관별 최종등급 통보

□ 최종등급

- 기관별 최종등급 확정 및 해당기관에 최종등급 통보(미래창조과학부, 9.11)
- 최종 등급 현황(총괄)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12> 기관별 최종등급 현황

연번	기관명	최종등급
1	가천대학교	A
2	가톨릭대학교	A
3	강남대학교	C
4	강릉원주대학교	B
5	강원대학교	A
6	건국대학교	A
7	건양대학교	B
8	경기과학기술대학교	C
9	경기대학교	B
1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A
11	경남대학교	A
12	경북대학교	A
13	경상대학교	A
14	경성대학교	A
15	경운대학교	B
16	경인교육대학교	B
17	경인여자대학교	D
18	경일대학교	A
19	경주대학교	C
20	경희대학교	A

연번	기관명	최종등급
21	경희사이버대학교	C
22	계명대학교	A
23	계명문화대학	D
24	계원예술대학교	D
25	고려사이버대학교	D
26	고신대학교	D
27	공주교육대학교	D
28	공주대학교	A
29	관동대학교	A
30	광운대학교	A
31	광주교육대학교	B
32	광주대학교	B
33	광주여자대학교	B
34	국민대학교	A
35	국방대학교	D
36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D
37	군산대학교	A
38	극동대학교	D
39	금강대학교	B
40	금오공과대학교	A
41	김천대학교	D
42	나사렛대학교	A
43	남부대학교	B
44	남서울대학교	B
45	단국대학교	A
46	대구가톨릭대학교	A
47	대구과학대학교	D
48	대구교육대학교	B
49	대구대학교	A

연번	기관명	최종등급
50	대구보건대학교	C
51	대구한의대학교	A
52	대림대학교	D
53	대원대학교	D
54	대전대학교	A
55	대진대학교	A
56	덕성여자대학교	A
57	동국대학교	A
58	동덕여자대학교	B
59	동명대학교	A
60	동서대학교	A
61	동신대학교	A
62	동아대학교	A
63	동양대학교	B
64	동양미래대학교	D
65	동원대학교	D
66	동의과학대학교	C
67	동의대학교	A
68	명지대학교	A
69	명지전문대학	C
70	목원대학교	B
71	목포대학교	A
72	목포해양대학교	B
73	배재대학교	A
74	백석대학교	C
75	백석문화대학교	B
76	부경대학교	A
77	부산가톨릭대학교	C
78	부산교육대학교	D

연번	기관명	최종등급
79	부산대학교	A
80	부산외국어대학교	A
81	부산장신대학교	D
82	부천대학교	D
83	북한대학원대학교	C
84	삼육대학교	B
85	상명대학교	A
86	상지대학교	A
87	서강대학교	A
88	서경대학교	B
89	서남대학교	C
9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
91	서울교육대학교	A
92	서울대학교	A
93	서울디지털대학교	D
94	서울시립대학교	A
95	서울여자대학교	A
96	서원대학교	B
97	서일대학교	C
98	서정대학교	C
99	선문대학교	A
100	성결대학교	D
101	성공회대학교	B
102	성산호대학원대학교	D
103	성신여자대학교	A
104	세명대학교	A
105	세종대학교	A
106	세한대학교	D
107	수성대학교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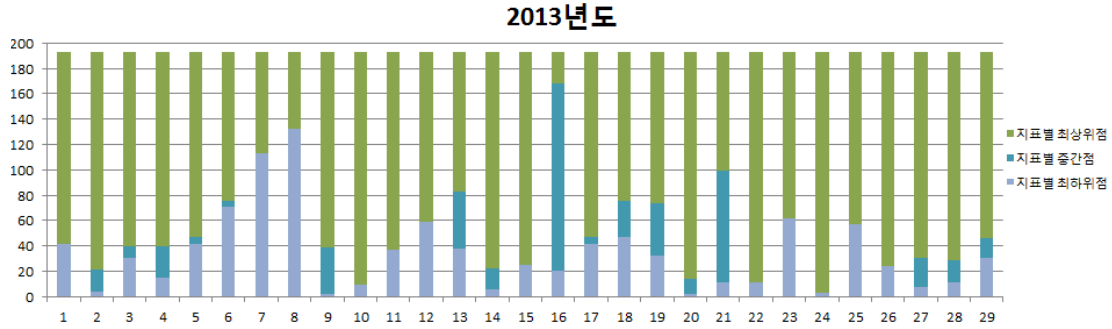
연번	기관명	최종등급
108	수원대학교	D
109	숙명여자대학교	A
110	순천대학교	A
111	순천향대학교	A
112	송실대학교	A
113	신라대학교	B
114	아주대학교	A
115	안동대학교	A
116	안양대학교	C
117	연성대학교	D
118	연세대학교	A
119	영남대학교	A
120	영남이공대학교	B
121	영동대학교	D
122	영산대학교	A
123	예수대학교	D
124	오산대학교	D
125	용인대학교	B
126	우석대학교	B
127	울산과학기술대학교	A
128	울산대학교	A
129	원광대학교	A
130	위덕대학교	C
131	을지대학교	B
132	이화여자대학교	A
133	인제대학교	A
134	인천대학교	A
135	인하공업전문대학	B
136	인하대학교	A

연번	기관명	최종등급
137	장로회신학대학교	C
138	전남과학대학교	C
139	전남도립대학교	D
140	전북대학교	A
141	전주교육대학교	D
142	전주대학교	A
143	제주대학교	A
144	조선대학교	A
145	중앙대학교	A
146	중원대학교	D
147	진주교육대학교	D
148	차의과학대학교	A
149	창원대학교	A
150	천안연암대학	D
151	청운대학교	C
152	청주교육대학교	B
153	청주대학교	B
154	초당대학교	D
155	춘천교육대학교	B
156	침례신학대학교	D
157	평택대학교	D
158	포항공과대학교	A
159	한경대학교	A
160	한국교원대학교	A
161	한국교통대학교	B
162	한국국제대학교	C
163	한국국학진흥원	C
16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A
16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A

연번	기관명	최종등급
166	한국복지대학교	D
16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A
168	한국성서대학교	D
169	한국외국어대학교	A
170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D
171	한국체육대학교	B
172	한국학중앙연구원	A
173	한국항공대학교	A
174	한국해양대학교	A
175	한남대학교	A
176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D
177	한동대학교	A
178	한라대학교	C
179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C
180	한림대학교	A
181	한림성심대학교	C
182	한밭대학교	A
183	한서대학교	B
184	한성대학교	C
185	한신대학교	B
186	한양대학교	A
187	한양사이버대학교	B
188	한양여자대학교	B
189	한일장신대학교	B
190	협성대학교	D
191	호남대학교	B
192	호서대학교	A
193	홍익대학교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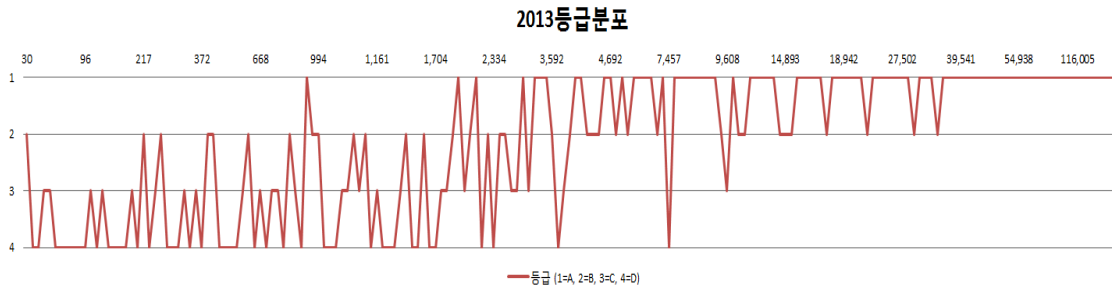
6. 실태조사 결과 통계

○ 지표별 점수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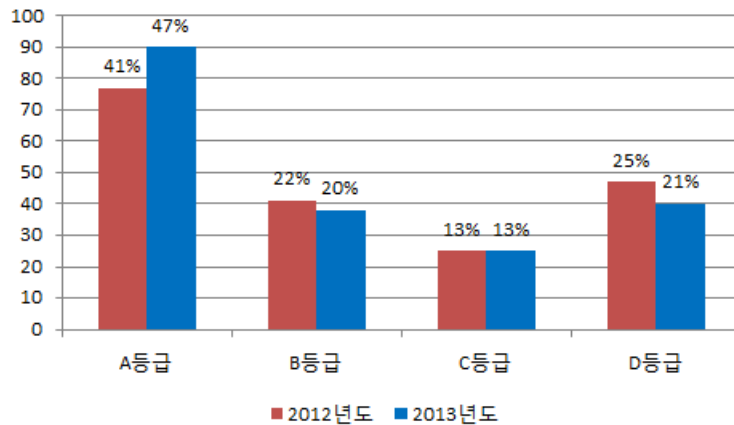
[그림 2-1] 지표별 최상위/중간/최하위 점수분포 현황

○ 연구규모별 점수분포



[그림 2-2] 기관별 연구비 규모에 따른 등급분포 현황

○ 전년대비 등급분포



[그림 2-3] 2012~2013년도 등급분포 현황

제3절 실태조사 제도개선 방안 연구

1. 추진배경

- 그간 추진된 연구를 통해 제도 수립 이후 정책 수요자들의 불만 또는 불편 사항을 감소 또는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 실제 해외 주요선진국 사례에 근거한 각종 조사지표를 통한 연구현장 연구비 집행관리 체제 개선, 실태조사 신청보고서 표준화 양식 제공 및 분량 감소 등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경감하여 왔으나,
- 이러한 노력(성과)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의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2. 연구비 관리제도 선행연구 및 제도개선 수요

□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선행 정책연구

-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연구로 연구비 관리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2-13> 연구비 관리제도 관련 정책연구 추진현황

연도	연구책임자		연구과제명
	성명	소속기관	
2004	김병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선진국의 국가연구개발비 관리제도 비교연구
2005	서관길	포항공과대학교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2007	서관길	포항공과대학교	대학분야 간접연구계상기준 개선방안
2007	이성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방안 연구
2008	서관길	포항공과대학교	대학 간접비 및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개선 연구
2009	송원흡	포항공과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 체계분석을 통한 모델개발 및 종합관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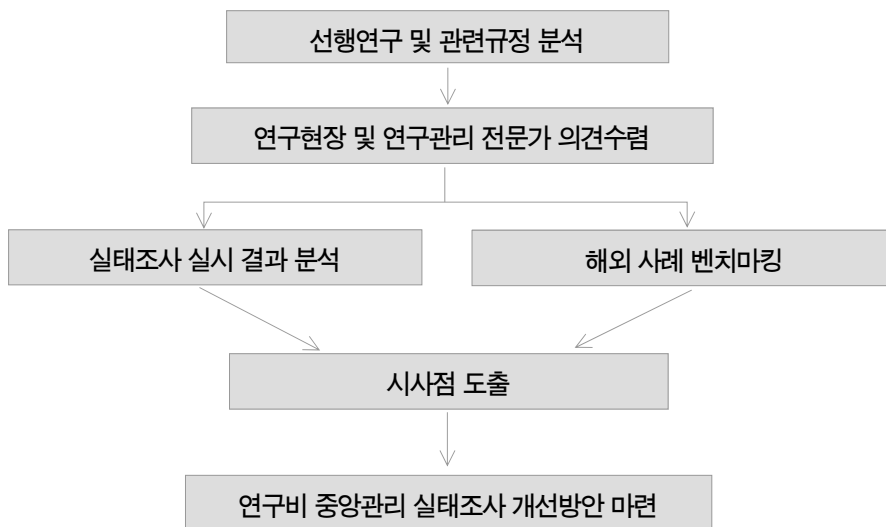
연도	연구책임자		연구과제명
	성명	소속기관	
2010	윤기봉	중앙대학교	대학 간접비 선진화 방안 연구
2010	이재원	성균관대학교	연구자의 연구전념 환경조성을 위한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표준모형 개발
2011	조성표	경북대학교	대학 간접비 계상기준 개선 방안
2011	조성표	경북대학교	미국과 일본의 국가연구개발사업비 관리 제도
2011	홍대식	연세대학교	대학 연구간접비 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수요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의 유사중복에 따른 통합검토 등
 - **(중복부분 통합)** 인증제와 중앙관리실태조사의 중복부분에 대한 통합 방안과 연구자에게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국정감사, '11.3)
 - **(사용실적보고)** 사용실적 보고면제 등 정산면제규정을 삭제하여 예산 부정 집행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 강구(권익위, '11.7)
 - **(유사중복)**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평가지표 유사중복 논란(국회)
 - **(연구비관리능력향상)** 실태조사 서면위주 및 현장평가 미 실시 기관에 대한 연구비 관리능력 상향 유도 미흡
 - **(유사중복)** 인증제 평가지표 유사중복 논란
- 연구비관리 유사제도 통합의 필요성
 - 인증제와 중앙관리 실태조사간 유사제도에 대한 통합요구 증가
 - 매년 중앙관리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인증 신청기관 중 대학의 경우 유사한 자료 작성·제출에 따른 행정부담 가중
 - 유사제도 통합 요구에 대한 문제점 해소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양 제도를 통합하여 새로운 제도로 운영 필요

3.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방법

- 선행연구 결과 및 관련규정 조사분석 등 문헌연구
 - 기존 연구비관련 문헌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미국 등 주요국의 연구비 지원·관리 제도 벤치마킹
- 연구참여자(연구자, 연구관리자 등) 대상 의견수렴
 -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 도출
-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 의견수렴
 - 실태조사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현실 적합한 개선안 모색, 구체적 실행계획 및 실행전략 마련 등



[그림 2-4]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4. 국내 연구현장 의견수렴 내용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간조정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최종 간접비율 고시율 적용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와 간접비 원가계산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고시율로 통보하고 있으므로,
- 간접비 원가계산 산출주기를 관련근거 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간접비율 산출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 필요

□ 교육(설명회) 시행 방법 개선 필요

- 서울, 대전 지역 위주의 행사로 소규모 지방대학 산학협력단(1~2명)의 원거리 교육 출장은 출장복귀 후 업무과중으로 교육출장을 망설이게 됨
- 따라서 광역권으로 세분화하여 지방 소대학의 편의 제공하며 온라인 교육과 설명회 실시가 필요함

□ 연구재단의 실태조사 평가방법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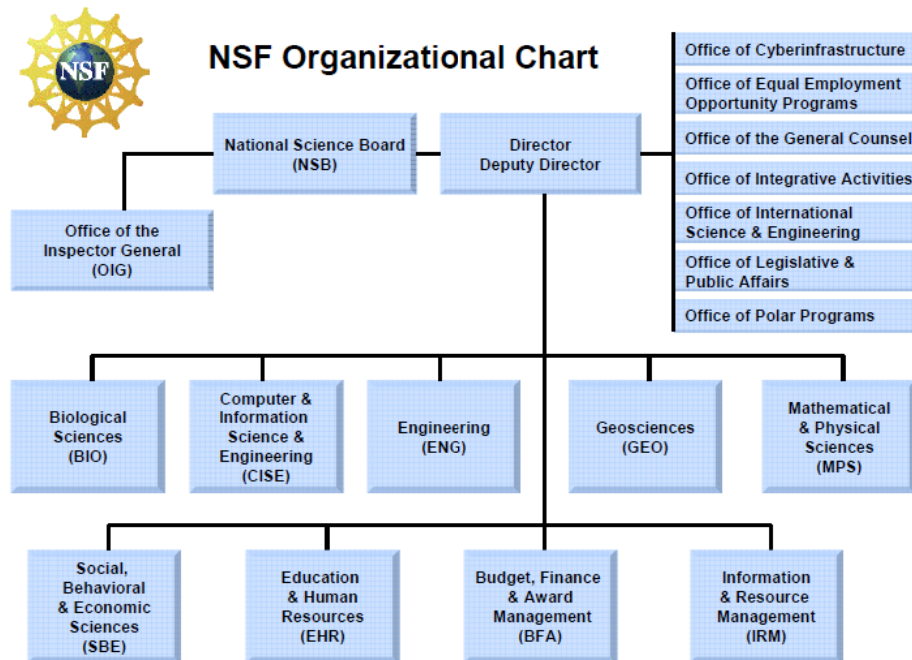
- 현행의 단일 평가항목 개선 필요 →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 예산(또는 연구수주) 규모에 따라 대학별 운영 및 관리 시스템에 차이가 있으리라 판단됨
-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 대학의 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소규모 대학이 따라가기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야 할 것임
- 지방 소규모 대학 산단의 운영여건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는 평가항목이 추가로 필요할 것임

5. 해외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벤치마킹

□ 미국의 연구비 관리

- 2012년 2월 13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2012년 예산 70억 3천 불 대비 4.8% 증액한 73억 7천만 불의 2013년 예산안을 미 의회에 제출
 -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난과 이에 따른 여러 분야의 정부 예산의 삭감을 고려할 때 이런 증액은 매우 이례적인 것임
 - 이는 현 정부가 생각하는 몇 가지 핵심 분야(클린 에너지, 기후 과학, 선진화된 제조 기술의 확보, 사이버 시큐리티)에 과학재단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런 핵심 분야에의 투자가 미국 경기 회복에 꼭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임
 - 예를 들면 증액된 예산으로 2013년에는 학제 간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가 2천만 불에서 6천 3백만 불로 증액될 전망이고 미국 교육부와 함께 6천만 불을 투자해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기초 수학 교육 과정을 개선하는 연구 등을 해나갈 예정
-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도 혁신(innovation)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혁신은 기초과학 연구 지원 없이는 일어날 수 없음을 역설한바 있음
 - 혁신을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상업적 가치의 창출로 정의했을 때 R&D를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미국 상무부의 경제분석청(Bureau of Economic Analysis)의 연구 결과
 - 보고서에 의하면 1998년~2007년간의 R&D 투자가 국민총생산(GDP) 성장에 평균 4%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경제 규모로 보아서 현재 초강대국 미국이 R&D에 투자하는 절대적인 비용은 정부와 산업 통틀어서 다른 어느 나라와 견줄 수 없지만 GDP 대비 상대적인 투자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뒤처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그림 4-2)
 - 다른 국가들 특히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 이 지역에서의 산업의 성장은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미국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 때문에 미국 정부는 특히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늘려가겠다는 입장이고 여기에는 과학재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미국의 과학기술 연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관들을 살펴보면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NASA), National Institute of Health(NIH)와 더불어 National Science Foundation(NSF)을 빼놓을 수 없음
 - NASA와 NIH의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구소와 연구 조직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과학재단의 경우 자체 연구보다는 연구 제안서를 검토하고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비를 배분하는 데 주 기능이 있음
 - 과학재단은 2차 세계대전 후에 1950년에 과학 발전, 국가 보건, 복지의 증진 및 국가 안보 확립의 목적을 가지고 과학재단법에 의해 정부 조직으로 설립
 -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기초과학 연구는 의료 보건 관련해서는 NIH가 그 밖의 과학기술 분야는 NSF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과학재단의 디렉터와 이사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원에서 인준
 - 이사회는 과학재단의 정책을 수립하며 대통령과 하원에 과학기술 및 교육에 관련된 조언을 제공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
 - 과학재단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음



[그림 2-5] 미국 과학재단 조직도

- 미국 과학재단은 현재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기초 과학 연구의 약 20% 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디렉터가 새로운 프로그램의 생성과 관리, 심사, 계획 등의 총 책임을 지고 있고 24인으로 구성된 미국과학이사회는 연 6회의 회의를 통해 과학재단 전체의 정책방향을 정함
 - 임기는 모두 6년이고 미국 과학재단에는 약 2,1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과학재단의 모든 프로그램은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은 교육과 연구가 분리될 수 없고 미래세대의 훈련이 없이는 연구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믿음 때문

□ 대학의 연구 관리 사례(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 미국 플로리다의 주립대 사례에 한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국과의 큰 차이점은 연구 지원 조직이 매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임
- Office of Research 에서 모든 연구 지원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데 공대와 부설 연구소들의 경우 5명의 담당 직원이 연구 제안서 제출 및 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고, 학과에 소속된 직원 4명이 연구 진행 및 관리(실험 물품 주문 및 영수증 처리, 연구비 정산, 대학원 조교 고용 등)를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대학원생이 영수증 처리 문제로 고심하고 비용 정산에 시간을 쏟는 일은 거의 없음
- 대학에서의 연구비의 집행 및 관리에 있어서 연구지원부서는 철저하게 연구자를 돕는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함
- 연구 지원부서는 학교 측과 펀딩 에이전시 간의 연락담당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학교 내의 연구자가 연구 과제를 개발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연구과제 개발 단계에서 연구 아이디어에 적합한 가능한 펀딩 에이전시의 검색에서부터, 예산안의 작성 및 검토, 과제 제안서의 검토 및 승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의 교섭, 실제로 제안서 내용대로 펀드를 받을 경우 이를 수락하고 승인하는 과정 모두를 관장함
- 또한 연구 지원부서는 연구자가 정부나 기업 등 과제를 스폰서 하는 주체가 제공하는 연구과제 규정 및 대학 정책의 요구사항에 어긋나지 않게 연구과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규정 내의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고 연구자를 가이드해 주는 역할도 함

- 더불어 개발된 지적재산권의 보호, 관리 및 상용화 과정을 관장하며 또한 실험실에서의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 과정도 지원함
- 이 모든 과정에서 담당자들은 역할을 분담해서 과제 책임자를 밀착 지원하며 무엇보다 과제 제출 시 규정 및 예산안 검토, 과제 수행 시에 지출 정산 등 행정적인 절차 등을 간소화해서 소속된 학과의 행정 직원과 함께 학생을 포함한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외의 행정적인 일에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함
- 온라인화 된 각종 지원 서비스들은 행정의 투명화와 연구비 집행의 착오, 실수 혹은 부정사용을 방지하는데 큰 기능을 하고 있음. 연구 지원 조직과 시스템은 이른바 연구 참여자들의 “잡무”가 최소화하도록 해서 연구에 투입되는 자금과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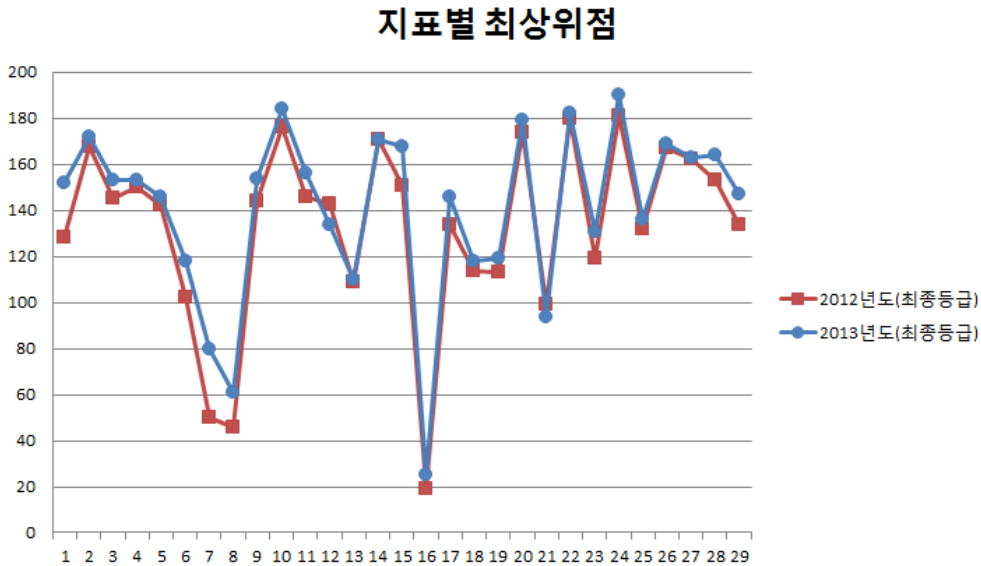
6. 실태조사 개선방안

□ 실태조사 제도개선 요구사항 검토

- 간접비 비율 산출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방안 검토
- 서울, 대전 지역 위주의 교육(설명회) 시행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동영상 제공 등 개선 방안 검토
- 각 대학 산학협력단 예산(또는 연구수주) 규모에 따라 현행 단일 평가항목 개선 검토
- 지방 소규모 대학 산학협력단의 운영여건을 감안, 실정에 맞는 평가항목 추가 검토
- 연구관리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컨설팅 풀, 연구기자재 등 공동 자원 활용을 위한 제도 구축 방안 검토

□ 실태조사 지표 개선방안 검토

○ 지표별 최상위점 2개년 비교 결과



[그림 2-6] 2012~2013년도 지표별 최상위점 현황

○ 실태조사 지표 2개년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실태조사 평가 세부지표(안)을 구성하면 <표 2-14>와 같음

<표 2-14> 중앙관리 실태조사 평가지표 개선(안)

지표	주요내용	비고
1	연구비 관리조직이 기관 본부부서(총장의 직접 보좌기구)로 편제되어 있다.	
2	연구비관리 업무수행을 전담하는 단일 조직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삭제
3	연구비 관리조직의 2년 이상 재직자 비율이 전체직원의 30% 이상이다.	
4	연구 관리 직원 전원이 연 1회 이상 직무 관련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5	연구자(연구보조원 포함)가 연구비 집행 관련 의문사항 및 문의사항과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파악 가능한 시스템이 있으며, 파악된 사항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6	연구공간, 연구시설, 범용기자재 등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진흥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강화
7	연구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표	주요내용	비고
8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를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강화
9	자체 연구관리 규정(협약, 정산, 회계, 구매, 성과관리, 감사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연구비지원기관의 연구관리 규정의 개정사항을 적시(6개월 이내)에 자체 규정에 반영, 연구자에게 공지하여 시행하고 있다.	
10	연구관련 자체 윤리규정 및 처벌규정을 구비하고 있다.	삭제
11	전용신고상담센터, 내부고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12	연구자 및 연구 관리자(직원)를 대상으로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3	예산 또는 집행 입력불가 팝업창 생성 등의 시스템적인 방법으로 초과증액, 과다계상, 비목신설, 기간 외 집행, 비참여연구원 집행, 내(외)부 인력의 참여율 관리, 연구비 카드시스템까지 사전모니터링시스템이 모두 구축되어 있다.	강화
14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계좌 이체를 제외하고는 법인카드(또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한다.	삭제
15	연구비 집행, 예산의 부적절 또는 부당 사용 등의 점검을 위한 자체감사 규정을 구비하고 있다.	
16	연구비 집행 관련 자체감사를 위한 독립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강화
17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18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행·재정 등)가 있으며, 재발방지 방안(교육, 당사자 재발방지 조치, 내부신고 시스템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19	연구과제관리시스템과 성과관리시스템 등이 통합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과제 및 연구비 전체 현황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시스템에서 수시로 검색할 수 있다(연구비, 기자재, 도서, 연구인력 등의 부처별, 사업별, 과제별 현황 조회 등).	
20	인건비 지급 시 연구계획서와 일치 여부가 검토되며(시스템 또는 매뉴얼), 개인별, 지출건별 지급 이력이 확인 가능하고, 인건비 지급 관련 제 규정(관련 세법 포함)을 준수하여 원천징수한 후, 금융기관을 통해 개별 계좌로 지급하고 있다.	삭제
21	구매요구자, 구매계약자, 물품검수자, 대금지급자 등이 구분되어 기자재(연구장비)가 중앙에서 구매되고 있으며 기자재(연구장비)는 검수를 거쳐 자산담당부서의 전산시스템 등에 기록되어 관리되며 공동사용이 가능하고 주기적으로 자산실사를 수행한다.	강화
22	모든 국내외 출장은 사전 승인(관련 지침에 따라)을 받으며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다.	삭제
23	자체 연구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참여연구원별 기여도 평가를 실시, 연구수당을 집행하고 있다.	강화
24	간접비 관련 규정 또는 지침 등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다.	삭제
25	간접비 집행 계획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보완
26	간접비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용도에 맞게 집행하였다.	보완
27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연구비관리전담조직(산학협력단 등)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완
28	회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행·재정 등) 및 재발방지 방안(교육, 당사자 재발방지 조치, 내부신고 시스템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보완
29	회계사 등의 전문가가,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인력이 회계/결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완

- <표 2-14>의 비교에서 ‘삭제’의 의미는 전체 집단의 평가세부지표 점수 분포에서 이미 대부분의 기관이 최고점을 획득한 지표로 더 이상 평가지표로써 변별력이 존재 하지 않음을 의미함
- 예를 들어, 연구비관리 전담조직 설치여부는 이미 2003년 산업교육진흥법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산학협력단 설립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부분의 기관에서 산학협력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그리고 ‘강화’의 의미는 실태조사 평가결과 하위 집단이 매우 낮은 점수를 획득한 지표들로 이는 보다 강화하거나 또는 필요하다면 연구비 수준을 고려하여 지표를 개선하는 등의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함
- 마지막으로 ‘보완’은 하위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지만 향후 연구비 관리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지표들을 의미함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통합 방안 검토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유사중복에 따른 통합 요구 증가
 - 중앙관리실태조사와 인증제의 중복부분에 대한 통합 방안과 연구자에게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국정감사, '11.3)
 - 연구비관리체계 부실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인증되지 않도록 인증 제도 강화(감사원, '11.6)
 - 사용실적 보고면제 등 정산면제규정을 삭제하여 예산 부정 집행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 강구(권익위, '11.7)
 -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평가지표 유사-중복 논란(국회)
-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의 서면위주 평가 및 현장평가 미 실시 기관에 대한 연구비 관리능력 상향 유도 필요
 - 현장평가는 15~20%, B등급 이상이 전체의 절반 이상(62.10%)을 차지하여 평가 변별력 미흡('12년 기준)

- 유사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부담 가중 해소 및 양 제도 통합을 통한 연구비관리체계 재정립 필요
- 개선방안
 -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는 폐지하며,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를 출연기관을 포함하여 확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간접비 비율 산출시 반영
 - －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를 공동관리 규정에 반영
 - － '14년도 통합 실태조사 시범실시 후 평가지표 등 개선사항 도출, 보완하여 '15년 시행 및 간접비 비율 산출시 반영 추진

※ 참고: 평가지표(안) 심층 현장평가를 고려하여 12개 평가지표, 48개 세부평가지표 도출

평가지표	세부평가 지표수	배점	지표				선정사유
			공통	특성	서면	현장	
① 연구비 집행 사전통제시스템 구축·운영	5	10	○		○	○	연구비 집행 오류 최소화
② 자체감사 체계적 실시	4	11	○		○	○	연구비 오·남용, 부정 집행 사전 예방 및 사후적 시정 조치
③ 연구관리 조직 및 인력	6	10	○		○	○	연구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은 필수
④ 연구관리 교육	2	5	○		○		연구관리인력의 직무 전문성 제고, 연구비 집행 오류의 사전예방 효과 제고
⑤ 연구관리규정·매뉴얼 구비 및 개정	3	6	○		○		효율적인 연구관리의 가이드 제공필요
⑥ 연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5	11	○		○	○	정보를 DB화하고 통계처리 함으로써 정보의 이용과 투명성을 유지
⑦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 적정성	2	5	○		○	○	연구관리부서에서 연구자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반영 하는 제도 필요
⑧ 인건비 집행관리	4(5)	10		○	○	○	「공동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인건비” 집행관리로 통합
⑨ 연구장비·재료비 집행	7	12	○		○	○	부정집행의 대표적 사례이며, 투명한 구매절차가 필요
⑩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 집행	4	8	○		○	○	부적정 집행 다수 사례 발생으로 인해 투명한 집행절차 확인 필요
⑪ 연구수당 집행	3	6	○		○	○	참여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체계 마련과 공정한 보상을 통한 사기진작
⑫ 간접비 집행	3	6	○		○	○	무분별한 간접비 집행 차단 필요
계(12)	48	100					

※ ()대학 세부평가지표수임

제3장

출연(연)·특정(연)·비영리기관 분야 간접비 산출



제3장 출연(연)·특정(연)·비영리기관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

제1절 추진근거 및 '13년도 간접비 산출기준

1. 추진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공동관리규정')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제12조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2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출연(연)·특정(연)·비영리기관 분야 간접비 계상기준 심의·확정을 위해, 「간접비산출위원회」 산하에 「간접비산출소위원회」를 구성·운영

제13조 ①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간접비 산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비영리법인별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13년도 간접비 산출기준

가. 산출사유

- 근거 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간접비 산출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개정('12년도 개정)되었고, '13년도는 산출년도에 해당됨.

나. 대상기관

- 다음 분야의 간접비 비율 산출 대상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기초기술연구회 (10개 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산업기술연구회 (14개 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재료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포함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15개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한국과학창의재단 제외

- 최근 3년간 정부 연구개발비를 50억 원 이상 지원 받은 13개 비영리 연구기관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삼성서울병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섬유개발원, 한국선급, 한국파스퇴르연구소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기준('10~'12년)

□ 접수현황

- 정부출연(연) 26개 기관, 특정(연) 15개 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11개 기관 총 52개 기관
 - 출연(연):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26개 기관
 - 특정(연):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15개 기관
 - 기타(연):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선급 등 11개 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간접비 비율 산출 비대상기관 인정 요청 공문 제출)

다. 간접비 계상기준 산출원칙

□ 출연(연)·특정(연)·비영리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 산출 원칙

- 기관별 실소요 간접비 계상기준 산출을 위해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은 전년도 결산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년도 추가소요 및 특이사항, 가감사항 반영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의 합을 직접비(인건비 및 기타직접비)에 대한 비율로 산출
 - ※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도 동일 기준 적용

$$\text{간접비 비율} = \frac{\text{인력지원비} + \text{연구지원비} + \text{성과활용지원비}}{\text{직접비}} + \frac{\text{당해연도 추가소요 간접비}}{\text{직접비}}$$

-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인건비(내·외부인건비), 기타직접비는 전년도 결산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현물, 민간수탁, 위탁연구비, 정부 출연금은 제외
- * 당해연도 추가소요 간접비는 전년도 간접비 외에 각 기관별로 추가로 소요될 간접비(특이사항 포함)
- * 비목/세목별 사용용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2.5.14. 개정본) [별표 2]에 따름
- *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인력 인건비는 각 기관별 급여 관련 규정에 따른 실질급 총액을 의미

라. 추가소요, 특이사항 및 가감사항

□ 추가소요

○ 연구시설·장비 추가설치에 따른 기관공통 지원경비 상승분

- 신축건물(연구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건물: 연구동 등)의 운영비에 한하여 완공시점으로부터 소요되는 경비의 50%만 인정
 - 완공일이 '13.1~6월인 경우 '13년 12월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소요운영경비의 50% 인정
 - '13.7~'14.11월인 경우 일괄 6개월분에 대한 소요운영경비의 50% 인정
- 정부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임차 건물을 신축 이전하는 경우 기존 임차면적 대비 증가된 신축면적만 인정
- 신축건물에 대한 소요 경비는 93천 원/m²을 기준(연구회 소관연구기관 '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기초)으로 하되
 - 정부 지원(38천 원/m², 40%)을 받는 시설은 55천 원/m²(60%)을 인정
 - 미지원 되는 시설은 소요 경비 전액(93천 원/m²)을 인정
- ※ 출연금 지원여부 판단은 건설비 재원을 확인하여 판단

□ 특이사항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추진에 따른 경비
 - 2013년도 신규채용인력(순수 증원된)에 한하여 소요비용을 인정(1인당 75만 원 한도)
- '12년도 계획 대비 절약된 경상경비의 70% 인정(국가연구개발사업 비율 만큼 인정)
 - ※ 기타 제기사항은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 타당성 및 반영 여부 판단

□ 가감사항

- (가점) 연구비관리 인증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3%p 이내에서 상향조정
 - ※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제3항의 1
 - ※ 2013년 대상기관

인증년도	기 관 명	인증기간
2010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1~'13

- (감점)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 및 부당자료 제출 사후적발 기관에 대해서는 건수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하향조정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의 참여제한 기간 및 위반 건수에 따라 감률

참여제한 기간	기준	1건		2건		3건 이상	
		가중치	감률	가중치	감률	가중치	감률
1년	0.2%	0.5	0.10%p	0.7	0.14%p	1	0.20%p
2년	0.3%	0.5	0.15%p	0.7	0.21%p	1	0.30%p
3년	0.5%	0.5	0.25%p	0.7	0.35%p	1	0.50%p
4년	0.8%	0.5	0.40%p	0.7	0.56%p	1	0.80%p
5년	1.0%	0.5	0.50%p	0.7	0.70%p	1	1.00%p

※ 참여제한유형별로 위반건수 당 가중치를 반영한 감률을 합산하여 최종 감률 산출

— 부당자료 제출로 간접비가 조정되었음이 적발·통보될 경우 건수별로 감률 적용

적용범위	적발건수별	건수별 가중치	합계(%p)
3%	1건	0.6	1.8
	2건	0.7	2.1
	3건	0.8	2.4
	4건	0.9	2.7
	5건 이상	1.0	3.0

제2절 산출방법

1. 간접비 비율 산출 추진 절차



2. 연구기관의 제출 자료

- 기본자료: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전년도 결산자료(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결산감사중점착안사항 등)

제출 자료	비 고
간접비 비율 산출 서식	필수
결산보고서	필수
감사보고서	필수
결산감사 중점착안사항 보고서	택1
결산회계법인의 간접비 비율 산출 서식 검토·확인서	
추가소요 및 특이사항	필요시

- 별도자료

- ① 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 서식
- ② 추가소요 및 특이 사항 증빙 등 근거자료

3. 산출 방법

- 간접비산출소위원회 위원 등을 활용하여 검토위원 구성·운영
 -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공인회계법인 소속위원, 출연(연) 회계전문가로 검토위원을 구성하여 2인 1분과 총 3개 분과로 작업반 운영
- 서면검토
 - 간접비산출소위원회 실무검토위원 작업반에서 기관별 제출자료 검토 실시, 필요시 보완자료 요청

□ 실무검토

- 분과별·일정별로 참석하여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간접비 산출 관련 자료를 확인, 필요시 보완자료 요청·검토
- 분과별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조율 후 비율 산정
- 실무검토위원은 공인회계법인 소속 위원 및 출연(연) 등 소속 위원으로 구성·운영
- 3개 분과로 구분

□ 소명검토

- 소명기관에 한하여 기관별 서류 접수 및 검토

□ 최종검토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특이사항 등 정책적 고려사항 검토
- 간접비산출소위원장: 기관별 간접비율에 대한 최종 확인
- 공인회계법인 소속위원: 영역별 확인한 자료에 대한 최종 확인
- 기관 전체에 대한 간접비 비율 검토·조정 후 간접비산출소위원회를 거쳐 2013년 간접비율 초안 마련

4. 간접비 비율 산출 실무검토 세부 일정

- 일 시: 2013. 8. 26(월) ~ 8. 30(금) 5일간
- 장 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훈련센터 1층 중강의실
- 산출 대상기관: 총 54개 기관
 - 출연(연):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26개 기관)

- 특정(연):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15개 기관)
- 비영리기관: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선급 등(13개 기관)

<표 3-1> 간접비 비율 산출 실무검토 분과별 일정

일정	실무검토위원		
	1분과	2분과	3분과
8.26(월)	서류검토		
8.27(화)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기수리과학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8.28(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DYETEC연구원 삼성서울병원
8.29(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사)고등기술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선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8.30(금)	추가검토 (재검토 기관 자료보완 및 소명)		

제3절 간접비 비율 산출 결과

□ 총괄현황

○ 산출기관 수

구분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연구기관	총계
대상기관 수	26	15	13	54
산출기관 수	26	13(△2)	10(△3)	49(△5)*

* 간접비 비율 산출대상 54개 기관 중 특정연구기관 2개 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비영리연구기관 3개 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5개 기관은 제외(산출비대상기관)

※ 간접비 비율 산출비대상기관 사유

기관명	산출비대상기관 사유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특정연)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비영리)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비영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R&D 전담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총사업비에서 일정비율의 기획평가관리비를 지원받아 기관 운영예산(인건비, 사업비, 경상비 등)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어 간접비 비율 산출 대상기관으로 적절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비 비율 고시 대상 제외 - 2013년 이후 간접비 비율 산출 비대상 기관으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산업진흥원(특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리 및 위탁집행형 기관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아 기관 운영예산(인건비, 사업비, 경상비 등)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어 간접비 비율 산출 대상기관으로 적절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비영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미수감으로 결산자료의 신뢰성이 의문시되어 간접비 비율 산출 대상기관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비 비율 고시 대상 제외 - 차기 간접비 비율 산출 대상 기관 포함 시 공인회계법인 회계 감사 수감 권고

□ 분야별 현황

○ 기초기술연구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7.61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11.08
	국가핵융합연구소	16.92
	한국천문연구원	44.8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63
	한국한의학연구원	27.14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12.9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4.7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9.92
	한국원자력연구원	24.7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7.46
	극지연구소	18.92

○ 산업기술연구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7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8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1.54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48
	한국식품연구원	9.4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6.19
	한국기계연구원	8.54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12.79
	한국전기연구원	13.60
	한국화학연구원	18.18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8.21
	재료연구소	5.89
	안전성평가연구소	11.18
	세계김치연구소	40.94

○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25.77
	광주과학기술원	19.3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7.72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34.69
	한국원자력의학원	35.61
	한국원자력통제 기술원	28.13
	한국연구재단	17.08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14.1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92
	한국세라믹기술원	20.1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7.53
	기초과학연구원	20.84
	국기수리과학연구소	18.31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산출비대상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출비대상기관

○ 비영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비영리기관	전자부품연구원	28.44
	자동차부품연구원	28.20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21.34
	(사)고등기술연구원	17.75
	(재)한국파스퇴르연구소	32.32
	한국광기술원	21.28
	삼성서울병원	17.77
	DYETEC연구원(한국염색기술연구소)	17.49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4.70
	한국선급	24.87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산출비대상기관 (공인회계감사미수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출비대상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출비대상기관

□ 차년도 간접비 산출시 검토 사항

- 2015년도 간접비 계상기준 산출기준 설정시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참여제한 감률 적용기준의 합리적 조정 필요(참여제한 1년, 2년, 3년, 4년, 5년 각각 1건씩 총 5건에 대한 총 감률은 1.4%이나, 5년 10건의 경우 1%밖에 감률되지 않으므로 불합리한 면이 있음)
- 정부출연(연) 또는 특정(연)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정부예산지원 비영리기관(전자부품연 등)의 경우, 결산 등이 기업회계기준을 따르고 있어 정부출연(연) 방식의 간접비 계상기준 설정이 곤란하므로 정부출연(연) 기준의 회계기준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간접비 계상기준 산출방식에 대한 간접비산출소위원회 위원, 산출 대상기관 담당자 등의 관련 기준 공유를 위한 사전 워크숍 등 필요
-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간접비율 적용시 고시 간접비 계상기준에 미달하는 간접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실제 적용 가능한 범위의 간접비 계상기준 상한 설정 등에 대한 검토 필요

참고 1 연구기관별 참여제한 현황(2011.1.1. ~ 2012.12.31.)

□ 작성기준

- 참여제한 제재기간 시작일이 대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감률적용
- 대상기간: 2011.1.1 ~ 2012.12.31

※ 참고사항: '12년도 간접비 비율 원가계산 산출기관은 '12년도 산출시 반영된 대상기간 (2011.1.1 ~ 2011.12.31) 제외

□ 출연(연), 특정(연), 비영리연구기관

1. 극지연구소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기간	제재내용	적용감률
기상청	기후변화 감시에 측 및 국가정책 지원강화사업	고산빙하, 육상퇴적물 및 기후 모델을 이용한 아시아 고기후 복원	연구결과불량	2011.03.01 2014.02.28	참여제한 3년	0.25% 감률적용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기간	제재내용	적용감률
중소 기업청	기술혁신 개발사업	기체분리막용 금속착물 도입 고분자막 제조기술 개발	기술료 미납	2012.07.12 2013.07.11	참여제한 1년	0.10% 감률적용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기간	제재내용	적용감률
지식 경제부	SW컴퓨팅산업 원천기술개발 사업(SW)	서비스 지향 맞춤형 모바일 미들웨어 기술 개발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1.08.02 2014.08.01	참여제한 3년	0.25% 감률적용
“	“	“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1.08.02 2012.08.01	참여제한 1년	0.14% 감률적용
“	“	“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1.08.02 2012.08.01	참여제한 1년	

4. 한국기계연구원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기간	제재내용	적용감률
지식 경제부	신뢰성산업체 확산사업	(대일수출을위한)건설중장비, 플 랜트, 자동차분야의 핵심부품 신뢰성 향상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9.19 2015.09.18	참여제한 3년	0.25% 감률적용

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기간	제재내용	적용감률
지식 경제부	에너지국제공동 연구기술개발 사업	1MW급 태양열 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연구	연구결과 불량	2012.09.05 2013.09.04	참여제한 1년	0.10% 감률적용

6. 한국화학연구원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기간	제재내용	적용감률
환경부	환경융합신기술 개발사업	기능성 나노입자 또는 MEMs (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s)를 이용한 분리막 표면분석기술 개발	연구결과 불량	2011.05.09 2012.05.08	참여제한 1년	0.10% 감률적용
환경부	차세대핵심 환경기술개발 사업	저분자 환경유해물질의 선택적 다중 검출용 나노-리만 시스템 기술 개발	연구결과 불량	2011.07.11 2014.07.10	참여제한 3년	0.25% 감률적용

7. 재료연구소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기간	제재내용	적용감률
지식 경제부	생산기반기술 개발사업 (사업화)	나선 가공된 고압실린더의 고정밀/내마모 내경 크롬도금 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1.02.09 2012.02.08	참여제한 1년	0.10% 감률적용
지식 경제부	에너지지원 기술개발사업	신 열환원에 의한 초미립 TiCN 분말제조 양산화 시스템 개발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5.25 2014.05.24	참여제한 2년	0.30% 감률적용
지식 경제부	부품소재종합 기술지원사업	특수강 정밀냉간압연공정 안정화 기술지원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5.24 2014.05.23	참여제한 2년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기간	제재내용	적용감률
지식 경제부	부품소재종합 기술지원사업	폭발용접기술 적용 전기 금구류의 제조기술 향상지원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2012.05.24 2014.05.23	참여제한 2년	
지식 경제부	부품소재종합 기술지원사업	유압용 관이음쇠 부품 아연도금 기술지원(2003)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2012.05.24 2014.05.23	참여제한 2년	
지식 경제부	부품소재종합 기술지원사업	유리기판상에 전도성 금속메쉬 정밀 전주기술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2012.05.24 2014.05.23	참여제한 2년	
지식 경제부	청정생산기반 기술전문기술 개발사업	반응고성형법에 의한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 및 제품의 정형제조 기술 개발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2012.02.09 2015.02.08	참여제한 3년	0.50% 감률적용
지식 경제부	부품소재종합 기술지원사업	MPS응용 바이오 부품 코팅 기술지원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2012.05.24 2015.05.23	참여제한 3년	
“	“	“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2012.05.24 2015.05.23	참여제한 3년	
지식 경제부	부품소재전문 기업기술지원 사업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장축 실린더 내경도금의 전류분포 기술지원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2012.05.24 2015.05.23	참여제한 3년	
지식 경제부	지역특화기술 개발	내식성 강부품의 제조를 위한 청정복합열처리기술 개발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2012.05.24 2015.05.23	참여제한 3년	
지식 경제부	항공우주부품 기술개발사업	항공기용 Sc첨가 고기능성 알루미늄 압출부품 개발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2011.06.01 2015.02.08	참여제한 4년	0.80% 감률적용
지식 경제부	i-메뉴팩처링 사업	환경친화 효율적 고성능 경질크롬 공정	연구비 유용	2011.04.20 2015.05.24	참여제한 4년	
“	“	“	연구비 유용	2011.04.20 2015.05.23	참여제한 4년	
지식 경제부	매뉴팩처링 사업	환경 친화형 고효율/고성능 경질크롬 실용화기술 개발	연구비 유용	2011.04.20 2015.05.23	참여제한 4년	
“	“	“	연구비 유용	2011.04.20 2015.05.23	참여제한 4년	

8. 한국과학기술원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기간	제재내용	적용감률
교육과학 기술부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진공증발법 CIGS 박막태양전지 고 효율화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2012.04.03 2017.04.02	참여제한 5년	0.70% 감률 적용
교육과학 기술부	신진교수지원 (인문사회분야)	LC4MP기반의 인간 정보처리와 Web상 시각 정보의 구조적 요소 관계 연구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2012.08.17 2017.08.16	참여제한 5년	

9. 자동차부품연구원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기간	제재내용	적용감률
중소 기업청	산학연공동기술 개발 선도과제	디젤 엔진 DC 연료 PUMP용 다단 제어기 개발	연구결과 불량	2012.03.13 2013.03.12	참여제한 1년	0.10% 감률적용

10. (사)고등기술연구원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기간	제재내용	적용감률
중소 기업청	제조현장녹색화 기술 개발사업	플라스틱증착도금 제조공정의 플라즈마 보합형 저항가열 증착시스템개발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수행	2012.05.18 2015.05.17	참여제한 3년	0.25% 감률적용

11.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기간	제재내용	적용감률
중소 기업청	기술혁신 개발사업	물리화학적 흡착에 의한 소취 섬유소재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섬유제품개발	연구결과 불량	2012.12.13 2013.12.12	참여제한 1년	0.10% 감률적용

[별첨 1]

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서식
(정부출연(연), 특정(연), 비영리기관)

□ 기관명 :

1) 수익의 구분

(단위: 천 원)

구분	수익종류		금액	비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합계	RA		
2) 사업(교육) 수익				
	합계			
3) 정부출연수익				
	합계			
4) 수탁연구과제사업수익				
	합계			
5) 기타수익				
	합계			
수익총계		RT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비율		RR		

* 연구와 사업(교육)을 모두 수행하는 기관은 연구수익과 사업(교육)수익을 구분하여 기입

* 총계금액(RT)는 손익계산서의 연구사업수익과 일치해야함

* 국가연구개발수익비율(RR) = RA/RT * 100

[수익의 정의]

1)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에서 발생한 연구사업수익
2) 사업(교육)수익	출연(연)의 설립목적상의 사업(교육)에서 발생하는 수익 (병원수익, 검인증수익 등)
3) 정부출연수익	기관설립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아 수행하는 기본사업, 일반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4) 수탁연구과제사업수익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업 및 민간기관 등에서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에서 발생하는 연구사업수익
5) 기타 수익	연구과제이외의 시험·검사 및 분석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자체연구사업수익, 그 외에 연구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 각 출연(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수적인 활동 제외(신용협동조합 등과 같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부서)

2) 직접비, 간접비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세부항목	국가연구 개발사업	사업(교육) 사업	공동 지원	정부출연 사업	수탁연구 사업	기타사업	합 계
직접비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직접비 소계	a)						
간접비	인력지원비	b1)						
	연구 지원 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건물,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연구지원비 소계	b2)					
	성과 활용 지원 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b3)						
간접비 소계(b=b1+b2+b3)		b)		c)				
차년도 추가소요 간접비		d)						

* 공동지원(e): 각 출연(연)에서 연구활동과 사업활동을 동시에 지원하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비용

* 국가연구개발수익비율(RR)이 85% 이상인 경우 사업원가 및 공동지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구원가에 포함하여 기입

※ 연구와 사업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 공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중 연구원가로 인정하는 금액 (e)

$$(e) = \text{공통지원}(c) \times \text{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비율}(RR)$$

(e) = (c) × (RR)	공통지원(c)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비율(RR)

* 현물, 위탁연구비 부분은 각 사업별 계에서 제외

* 산출내역은 집행액 기준으로 작성

3) 간접비 비율 산출

(단위: 천 원)

구 분	직접비 (a)	인력지원비 (b1)	연구지원비 (b2)	성과활용 지원비 (b3)	차년도 추가 소요 간접비 (d)	공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중 연구원가로 인정하는 금액 (e)
금 액						
A: 실적간접비비율	$A = (b1 + b2 + b3 + e) / (a) \times 100$					%
B: 추가간접비비율	$B = d / (a) \times 100$					%
총 간접비비율	A + B					%

4) 비목별 세부내역

① 직접비

○ 인건비

(단위: 천 원)

구분	항목	세부항목	국가연구 개발사업	사업(교육) 사업	정부출연 사업	수탁연구 사업	기타사업	합 계	
인 건 비	내부 인건비	급여							
		법정부담금							
		퇴직총당금							
		소 계							
	외부 인건비	급여							
		법정부담금							
		퇴직총당금							
		소 계							
	합 계								

* 현물, 위탁연구비 부분은 각 사업별 계에서 제외

* 연구 직접참여 인건비를 기준으로 작성

○ 인건비 집행현황(연구직접참여 인건비)

(단위: 천 원)

직종 및 직급 구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합 계
			연구직	전문관리직	임원	소 계		
인원현황(명)								
연봉 급여	정액급 및 연구활동비	정액급						
		연구활동비						
		소 계						
	성과급	평가급						
		속인급						
		가족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차량보조비						
		육아수당						
		학자금보조비						
		소 계						
법정 부담금	법정수당 및 기관부담금	연차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충당금						
		소 계						
연봉 합계								
연봉외 급여	연구수당							
	소 계							
급여성 경비								
	소 계							
합 계								

* 각 기관별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항목 구성 및 직종, 직급 작성

* 결산보고서에 대한 중점착안사항 보고서를 내는 기관은 인건비 집행현황 별도 작성 제외

○ 인건비 집행의 재원별 조달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연구개발사업비			정부출연사업			수탁연구사업	기타사업	합 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교육)사업	소 계	기본사업	일반사업	소 계			
내부인건비(A)									
외부인건비(B)									
소 계(A+B)									
지원인력인건비(C)									
합계D=(A+B+C)									

* 결산보고서에 대한 중점착안사항 보고서를 내는 기관은 인건비 재원별 조달현황 별도 작성 제외

② 기타직접비

(단위: 천 원)

번호	세부항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교육)사업	정부출연사업	수탁연구사업	기타사업	합 계
1	연구장비 재료비						
2	연구활동비						
3	연구과제추진비						
4	연구수당						
	기타직접비 합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에 의거 작성

* 현물, 위탁연구비 부분은 각 사업별 계에서 제외

<예시>

1. 연구장비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등
2. 연구활동비: 여비, 회의비 및 식대, 수송비 및 수수료 등
3. 연구과제추진비: 여비, 사무용품 및 연구환경유지비, 회의비 및 식대 등
4. 연구수당: 연구수당

③ 간접비

(단위: 천 원)

항목구분	국가연구 개발사업 지원 (A)	사업 (교육) 사업지원 (B)	공통지원 (C)	정부출연금 사업지원 (D)	수탁연구 사업지원 (E)	기타사업 지원 (F)	합 계 G=(A+B+ C+D+E+F)
I. 인력지원비							
1. 지원인력 인건비							
2. 행정지원전담요원인건비							
3.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인력지원비 소 계							
II. 연구지원비							
1.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 공공요금							
2) 제세공과금							
3) 보험료							
4) 국내외분담금							
소 계							
2. 건물, 시설장비유지관리비							
1) 기술정보 및 전산정보운영비							
2) 행정자산취득비							
3) 차량유지비							
4) 임차료							
5) 공통시설 및 장비유지비							
6) 시설위탁용역비							
소 계							
3. 수용비 및 수수료							
1) 기술진흥비							
2) 직책관공비 등							
3) 체력증진 및 위생비							

항목구분	국가연구 개발사업 지원 (A)	사업 (교육) 사업지원 (B)	공동지원 (C)	정부출연금 사업지원 (D)	수탁연구 사업지원 (E)	기타사업 지원 (F)	합 계 G=(A+B+ C+D+E+F)
4) 복지시설운영비							
5) 기타운영비							
6) 도급인력용역비							
7) 수용비 및 수수료							
8) 행정지원비							
소 계							
4. 연구실안전관리비							
5. 연구보안관리비							
6. 연구윤리활동비							
7. 연구개발준비금							
8.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연구지원비 소 계							
Ⅲ. 성과활용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간접비 집행액 총계(㉠) ㉠=(Ⅰ+Ⅱ+Ⅲ)							
간접비 총계(㉡)							
간접비 이월액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에 의거 작성하되, 각 기관별로 손익계산서상의 비목을 고려하여 작성

* 간접비 총계는 기관별 간접비 흡수액 기준으로 작성

* 현물, 위탁연구비 부분은 각 사업별 계에서 제외

□ 차년도 추가소요 간접비 내역

(단위: 천 원)

번호	항 목	금 액	내 역
1			
2			
3			
4			
5			
합 계			

□ 특이사항

(단위: 천 원)

번호	항 목	금 액	내 역
1			
2			
3			
4			
5			
합 계			

예)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추진에 따라 경비(필요시), 전년대비 절약된 경상경비의 70% 인정 등

□ 가점사항

번호	항 목	비율(%)	내 역
1			

예) 연구비 인증기관 3%p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 (인증발급 해당연도 기재)

□ 감점사항

번호	항 목	비율(%)	내 역
1			
2			
3			
4			
합 계			

예)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 및 부당자료 제출 사후적발 기관

[붙임 1] 연도별 간접비율(출연(연), 특정(연), 비영리기관, '09 ~ '13)

구분	기관명	연도별 간접비율				
		2009	2010	2011	2012	2013
기초기술 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7.74	24.44	20.37	20.37	17.6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57	17.45	15.48	15.48	12.6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2.69	18.97	16.14	16.14	11.08
	국가핵융합연구소	13.65	17.00	17.45	17.45	16.92
	한국천문연구원	28.34	38.67	44.11	44.11	44.80
	한국한의학연구원	22.70	25.60	25.84	25.84	27.1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49	16.15	14.34	18.61	12.9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4.89	14.28	10.23	10.23	14.7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6.70	19.32	18.09	18.09	17.46
	극지연구소(해양연 부설)**	16.70	19.32	26.38	26.38	18.9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61	8.20	7.79	11.83	9.92
	한국원자력연구원	30.78	30.75	28.77	28.77	24.75
산업기술 연구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54	14.35	14.68	15.44	11.7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24	23.76	23.76	23.76	23.81
	국가보안기술연구소(전통연 부설)	23.24	31.10	32.04	32.04	18.21
	한국식품연구원	22.26	23.27	13.84	13.84	9.43
	한국기계연구원	14.64	12.62	11.29	11.29	8.52
	재료연구소(기계연 부설)	19.59	13.83	13.12	13.12	5.89
	한국전기연구원	22.00	22.09	18.99	18.99	13.60
	한국화학연구원	25.84	20.45	19.64	19.64	18.18
	안전성평가연구소(화학연 부설)	22.68	24.91	13.52	13.52	11.1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83	22.34	19.29	19.29	21.54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8.66	21.60	20.72	20.72	16.4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1.89	15.81	16.76	16.76	16.1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3.60	8.35	10.83	15.41	12.79
	세계김치연구소	-	-	26.09	26.09	40.94
특정연구 기관	한국과학기술원	19.52	26.09	26.25	26.25	25.7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1.77	30.39	38.69	38.69	34.69
	한국원자력의학원	32.94	36.04	35.65	35.65	35.6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0.62	22.42	23.43	23.43	28.13

구분	기관명	연도별 간접비율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연구재단	18.96 ¹⁾	17.11	17.29	18.73	17.08
	광주과학기술원	26.57	25.36	22.99	22.99	19.3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7.24	16.05	14.92	15.83	14.1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4.61	23.54	23.27	23.27	17.5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5.53	36.82	17.00	17.00	27.7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1.56	19.52	19.52	22.92
	한국세라믹기술원	-	25.01	22.28	22.28	20.1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7.11 ¹⁾	22.33	2)	2)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2)	2)	2)	2)
	기초과학연구원***	-	-	-	-	20.84
	국가수리과학연구소****	22.69	18.97	16.14	16.14	18.31
비영리 법인	전자부품연구원	20.79	21.25	21.18	24.55	28.44
	자동차부품연구원	23.89	27.63	26.99	26.99	28.20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22.70	25.34	19.80	21.19	21.34
	(사)고등기술연구원	25.11	18.91	18.37	18.37	17.75
	(재)한국파스퇴르연구소	48.07	39.10	33.84	36.67	32.32
	한국신발피혁연구소	-	-	24.26	24.26	2)
	나노융합팩센터	-	-	24.39	24.39	2)
	DYETEC연구원(한국염색기술연구소)	-	-	2)	2)	17.49
	한국광기술원	-	2)	2)	2)	21.28
	한국선급	-	-	-	-	24.87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	2)	2)	14.70
삼성서울병원	-	-	2)	2)	17.77	

- 1)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기관 신설의 이유로 간접비율 산출을 신청하지 못한 기관은 기관 신설 후 필요시 간접비율 재산정 요청 가능
- 2)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간접경비를 계상함('09년도 이후 기준)

* 한국해양연구원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명칭 변경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소속부처 변경 ('12.07.01)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기관('12.07.01)

*** 기초과학연구원(IBS) 신설('12.08.09)

****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서 기초과학연구원(IBS) 부설기관으로 소속 변경('12.08.09)

제4장

대학분야 간접비 산출



제4장 대학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

제1절 추진근거 및 '13년도 간접비 산출기준

1. 추진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공동관리규정')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2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대학분야 간접비 계상기준 심의·확정을 위해, 「간접비산출위원회」 산하에 「대학분야 간접비 산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제13조(간접비산출위원회) ①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간접비산출위원회를 둔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간접비 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2. '13년도 간접비 산출기준

가. 산출사유

- 근거 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간접비 산출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었고, '13년도는 산출연도에 해당

* '12년「공동관리규정」개정으로, 간접비 산출주기를 2년으로 연장

나. 대상기관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 B등급 이상 대학* 중 간접비 원가계산 산출을 희망하는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대학별 산학협력단 포함)

□ 접수현황

- 가천대 등 A등급 대학 66개*, 강릉원주대 등 B등급 대학 3개 등 총 69개 대학 원가계산 산출 희망 신청

* A등급에는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5개 대학(성균관대, 고려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포함

다. 간접비 비율 산출원칙

- (산출기준) 2가지 방식 적용하되 상호 연계 통해 간접비 비율 산출

① '13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간접비 비율 결정

- 신청 대학의 '13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등급 부여 및 간접비 비율 부여

* 대학의 연구관리 인프라, 연구비 집행관리 시스템 등을 조사·평가 후 등급(A~D등급) 부여
(절차: 자체 평가 → 현장 표본 조사 → 이의신청 및 등급부여)

등급	A(90점 이상)	B(80~90)	C(80~70)	D(70점 미만)	미신청
간접비 비율	20%	15%	10%	5%	3%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받은 대학은 A등급으로 결정(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3항)

② 「원가계산 기준 방식」에 따른 간접비 비율 산출

- 실태조사 결과 B등급 이상 대학 중 희망하는 대학은 원가산출 후 실사율별 간접비 비율 배분
- 실사율에 따른 기관별 간접비 비율 상한기준 적용

* '13년도 실사율별 간접비 적용비율

실사율	40% 이상	35% 이상	30% 이상	28% 이상	28% 미만
적용비율	31%	30%	29%	28%	실사율

〈 대학분야 원가계산에 따른 간접비 비율 산출식 〉

□ 간접비 계상기준 산출식: $A + B \pm C$

A. 연구부문 간접비 비율:	$\frac{\text{연구부문 인건비} + \text{연구진흥경비}}{\text{연간연구비}}$
B. 공통부문(연구·교육) 간접비 비율 :	$\frac{(\text{공통부문 인건비} + \text{관리운영비}) \times \text{연구수익비율}}{\text{연간연구비}}$
	※ 연구수익 비율 = 연구수익 / (연구수익 + 교육수익)
C. 인센티브 등 조정보율	※ 간접비 비율의 상한선 적용 후에 반영

□ 연구와 관련된 간접비용만 계상

○ 대학운영 비용을 연구부문, 교육부문, 연구와 교육이 혼합된 공통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제 연구와 관련된 부문의 간접비용만 산출

– 연구와 관련이 없는 교육부문의 인건비, 관리비 등 사용은 제외하고, 공통부문(교육·연구 공통)은 연구와 관련된 부분만 인정

○ 공통부문 중, 연구 활동과 관련된 부분만을 계산하기 위해 개별대학의 ‘연구수익 비율’을 산출하여 곱함

※ 연구수익 비율 = 연구수익 / (연구수익 + 교육수익)

마. 가감사항

□ (관련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

* 제14조(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연구관리 우수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분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 중 하나 이상의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시 간접비 비율 상향 조정

*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은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해당 연구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한다.

○ (가점)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대학의 간접비 계상기준은 3%p 상향조정

※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제3항의 1

○ (감점)

- ① '13년 연구비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 B등급을 받은 기관은 최종 계상기준에서 3%p 하향조정
- ②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 및 부당자료 제출 사후적발 기관에 대해서는 건수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하향조정('11~'12년 대학별 참여제한 현황: 붙임1)
 - '13년도 실태조사 등급에 따른 일괄 간접비 계상기준 적용 및 원가산출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 결정 후 '11~'12년도에 받은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에 따라 감률 적용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참여제한 기간 및 위반 건수에 따라 감률

참여제한 기간	기준	1건		2건		3건 이상	
		가중치	감률	가중치	감률	가중치	감률
1년	0.2%	0.5	0.10%p	0.7	0.14%p	1	0.20%p
2년	0.3%	0.5	0.15%p	0.7	0.21%p	1	0.30%p
3년	0.5%	0.5	0.25%p	0.7	0.35%p	1	0.50%p
4년	0.8%	0.5	0.40%p	0.7	0.56%p	1	0.80%p
5년	1.0%	0.5	0.50%p	0.7	0.70%p	1	1.00%p

※ 참여제한유형별로 위반건수 당 가중치를 반영한 감률을 합산하여 최종 감률 산출

• 부당자료 제출로 간접비가 조정되었음이 적발·통보될 경우 건수별로 감률 적용

적용범위	적발건수별	건수별 가중치	합계(%p)
3%p	1건	0.6	1.8
	2건	0.7	2.1
	3건	0.8	2.4
	4건	0.9	2.7
	5건 이상	1.0	3.0

【추가 실무 세부기준 적용】

□ 참여제한 감률 적용 세부기준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저술출판지원사업 등 공동관리규정 미적용 사업은 제외
- 참여제한 제재시작일 기준으로 적용기간(2011.1.1~2012.12.31)에 포함되면 적용
 - ※ 2012년도 원가산출 희망대학의 간접비 비율 산출시 반영되었던 부분 제외

□ 교육수익 산출시 세부기준

- 연구수익비율 산정 관련 교육수익 산출시 ‘학비감면 차감’ 범위는 교내장학금 중 근로장학금 및 기금회계 교내장학금 전액을 제외한 금액을 인정
 - － ‘학비감면 차감’은 선차감, 후지급에 무관하게 등록금 재원에서 지급된 감면액을 전액 인정함. 교내장학금 중 기금회계에서 지급된 교내장학금(등록금 재원이 아님으로 학비 감면이 아님)과 등록금회계 교내장학금 중 근로장학금(명칭이 장학금이기는 하나 서비스를 구매한 비용으로 인식됨) 두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인정함
 - ※ ‘학비감면 차감’ 인정 세부기준을 제3차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 현행 기준으로 변경기로 의결
(당초 적용기준) ‘학비감면 차감’ 범위를 교내장학금 중 등록금고지서 발부 시 선차감 (사전면제 또는 감액)된 금액만 인정

제2절 산출방법

1. 간접비 비율 산출 추진 절차

-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에 따라 KISTEP에서 기관별 간접비 비율(안)을 산출하고 간접비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접비율 계상기준 고시

※ 적용기간: 당해연도 계상기준 고시일 ~ 다음 계상기준 고시 전일

추진단계	추진주체	세부추진사항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확정	· 간접비산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비 비율 산출 원칙, 기준, 산출서식, 산출 대상기관 확정
기관별 간접비 비율(안) 산출	· KIST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간접비 실사율 및 가감률 산출 ■ 기관별 의견수렴 및 보완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안) 결정	· 간접비산출소위원회 · 간접비산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간접비 실사율 및 가감률 결정 ■ 간접비 계상기준(안) 결정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 미래창조과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간접비 비율 확정 및 관보고시

2. 대학의 제출 자료

제출 자료	비고
간접비 비율 산출 서식	필수
결산보고서	필수
감사보고서	필수

□ 기본자료: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전년도(2012년도) 결산자료(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 별도자료

① 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 서식

② 2010년, 2011년 공통부문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확인 가능한 자료 1부 (결산서 또는 해당 부분 발췌한 후,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3. 산출 방법

□ 회계법인을 선정·업무 위탁하여 간접비 산출

○ 실무검토 ①

- 회계법인에서 대학별 간접비 산출 관련 제출자료를 확인, 필요시 보완자료 요청·검토
- 소명기관에 한하여 대학별 서류 접수 및 검토

○ 실무검토 ②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가감사항 등 정책적 고려사항, 대학별 소명서류 및 간접비율 검토
- 간접비산출소위원회: 대학별 간접비율에 대한 최종 확인 및 조정 후 2013년 간접비율 초안 마련

4. 간접비 비율 산출 실무검토 세부 일정

□ 원가계산에 의한 간접비 비율 적용 희망대학

○ 간접비 원가 확인

- 일시 및 장소: 2013.10.28~11.15 /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 408호
- 확인기관: 삼일회계법인(용역의뢰)

- 대상기관: 총 69개 대학(A등급 66개, B등급 3개)
- 현장점검
 - 일시: 2013.11.12~11.13
 - 점검대상: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 점검내용: 간접비 원가계산 관련 규정 검토 및 관련서류 등 확인
 - 점검기관: 삼일회계법인, KISTEP 공동
- 2013년도 간접비 비율(안) 산출
 - 회계법인의 원가계산 결과 및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결과 등에 가감율을 반영하여 대학별 간접비 비율(안) 산출
- '13년도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결과 일괄적용 희망대학
 - 2013년도 간접비 비율(안) 산출
 -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결과에 가감율을 반영하여 대학별 간접비 비율(안) 산출
- 대학 분야 간접비산출소위원회 개최(11.26, 12.4.)
- '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13.12.27.)

제3절 간접비 비율 산출 결과

□ 총괄표

구분	2012년도 고시 대학	2013년도 실태 조사실시대학 (A)	2013년도 간접비 비율 산출(안)			증△감 (E=D-A)
			원가계산 대학 (B)	실태조사 일괄적용 대학 (C)	계 (D=B+C)	
대학수	194	198	69	127	196	△2

* (A)에는 연구비관리우수인증 5개 대학(고려대, 성균관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포함

* (E)는 2013년도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참여기관 중 비대학 2개 기관(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임

○ 2013년도 원가계산에 의한 간접비 비율 산출 희망대학(69개)

<표 4-1> '13년도 원가계산 희망 대학 간접비 비율

(단위: %)

연번	대 학 명	2013년도						2012년도 최종비율
		실태조사 등급	실사비율	적용비율 ¹⁾	조정비율 ²⁾	감률 (참여제한)	최종비율	
1	가천대학교	A	39.08	30.00	-	△0.65	29.35	29.00
2	가톨릭대학교	A	39.86	30.00	-	△0.25	29.75	30.00
3	강원대학교	A	31.98	29.00	-	△0.80	28.20	27.00
4	건국대학교	A	28.34	28.00	-	△0.35	27.65	27.20
5	경남대학교	A	46.32	31.00	-	△0.10	30.90	31.00
6	경북대학교	A	38.03	30.00	-	△0.10	29.90	30.00
7	경상대학교	A	32.68	29.00	-	-	29.00	29.00
8	경성대학교	A	42.06	31.00	-	-	31.00	27.47
9	경일대학교	A	37.33	30.00	-	-	30.00	31.00
10	경희대학교	A	35.48	30.00	-	-	30.00	30.00
11	계명대학교	A	40.75	31.00	-	-	31.00	29.00
12	고려대학교	A	29.81	28.00	3	△0.25	30.75	29.85

연번	대 학 명	2013년도						2012년도 최종비율
		실태조사 등급	실사비율	적용비율 ¹⁾	조정비율 ²⁾	감률 (참여제한)	최종비율	
13	공주대학교	A	44.11	31.00	-	△0.35	30.65	29.00
14	광운대학교	A	35.35	30.00	-	△0.25	29.75	25.00
15	국민대학교	A	38.69	30.00	-	-	30.00	29.00
16	군산대학교	A	55.08	31.00	-	△0.10	30.90	31.00
17	단국대학교	A	39.74	30.00	-	△0.10	29.90	30.00
18	대구가톨릭대학교	A	40.63	31.00	-	-	31.00	29.00
19	대구대학교	A	42.02	31.00	-	-	31.00	31.00
20	대구한의대학교	A	38.55	30.00	-	-	30.00	30.00
21	대전대학교	A	33.21	29.00	-	-	29.00	29.90
22	동국대학교	A	39.60	30.00	-	△0.35	29.65	31.00
23	동아대학교	A	37.19	30.00	-	△0.25	29.75	30.00
24	동의대학교	A	56.19	31.00	-	-	31.00	31.00
25	명지대학교	A	24.57	24.44	-	△0.10	24.34	23.83
26	목포대학교	A	30.73	29.00	-	△0.25	28.75	27.50
27	배재대학교	A	42.02	31.00	-	-	31.00	28.00
28	부경대학교	A	38.47	30.00	-	△0.75	29.25	28.65
29	부산대학교	A	30.82	29.00	-	△0.39	28.61	30.00
30	부산외국어대학교	A	47.33	31.00	-	-	31.00	31.00
31	상명대학교	A	36.67	30.00	-	-	30.00	29.00
32	서강대학교	A	36.43	30.00	-	△0.14	29.86	29.00
3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	41.19	31.00	-	△0.25	30.75	30.00
34	서울대학교	A	31.51	29.00	-	△0.10	28.90	28.51
35	성균관대학교	A	34.26	29.00	3	-	32.00	31.00
36	세종대학교	A	27.80	27.80	-	-	27.80	21.76
37	숙명여자대학교	A	48.02	31.00	-	-	31.00	31.00
38	숭실대학교	A	40.91	31.00	-	-	31.00	30.00
39	아주대학교	A	38.57	30.00	-	-	30.00	29.00

연번	대 학 명	2013년도						2012년도 최종비율
		실태조사 등급	실사비율	적용비율 ¹⁾	조정비율 ²⁾	감률 (참여제한)	최종비율	
40	안동대학교	A	34.74	29.00	-	-	29.00	30.00
41	연세대학교	A	34.51	29.00	-	△1.20	27.80	32.00
42	영남대학교	A	30.56	29.00	-	-	29.00	30.00
43	울산과학기술대학교	A	70.13	31.00	-	-	31.00	31.00
44	울산대학교	A	49.66	31.00	-	△0.14	30.86	26.79
45	원광대학교	A	49.07	31.00	-	△0.10	30.90	29.00
46	이화여자대학교	A	30.45	29.00	-	△0.10	28.90	29.00
47	인제대학교	A	42.13	31.00	-	△0.25	30.75	30.00
48	인천대학교	A	21.76	21.76	-	△0.80	20.96	30.00
49	인하대학교	A	33.19	29.00	-	△0.20	28.80	28.00
50	전남대학교	A	38.54	30.00	3	△0.14	32.86	34.00
51	전북대학교	A	35.42	30.00	-	△0.14	29.86	32.00
52	전주대학교	A	44.12	31.00	-	△0.45	30.55	31.00
53	제주대학교	A	31.94	29.00	-	△1.40	27.60	29.00
54	조선대학교	A	40.92	31.00	-	△0.25	30.75	30.00
55	중앙대학교	A	33.21	29.00	-	△0.85	28.15	29.00
56	창원대학교	A	40.61	31.00	-	-	31.00	29.60
57	충남대학교	A	29.56	28.00	3	△0.10	30.90	33.00
58	충북대학교	A	33.54	29.00	3	△0.10	31.90	32.00
59	포항공과대학교	A	54.35	31.00	-	△0.39	30.61	31.00
60	한국외국어대학교	A	34.36	29.00	-	△0.10	28.90	30.00
61	한국항공대학교	A	30.12	29.00	-	-	29.00	29.00
62	한국해양대학교	A	31.16	29.00	-	-	29.00	30.00
63	한남대학교	A	31.79	29.00	-	-	29.00	22.03
64	한림대학교	A	31.89	29.00	-	-	29.00	28.00
65	한밭대학교	A	35.46	30.00	-	-	30.00	30.00
66	한양대학교	A	30.14	29.00	-	△0.50	28.50	29.00

연번	대 학 명	2013년도						2012년도 최종비율
		실태조사 등급	실사비율	적용비율 ¹⁾	조정비율 ²⁾	감률 (참여제한)	최종비율	
67	강릉원주대학교	B	37.50	30.00	△3	-	27.00	28.00
68	경기대학교	B	32.64	29.00	△3	-	26.00	26.00
69	한국교통대학교	B	40.37	31.00	△3	-	28.00	29.00

- 1) 적용비율: '13년 실사비율에 따른 간접비 비율 상한기준 적용에 따른 비율
 2) 조정비율: '13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 B등급 대학 원가계산 신청에 따른 감률(△3) 및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가율(3)

○ 2013년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 일괄적용 대학(127개)

<표 4-2> '13년도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등급 적용 대학 간접비 비율

(단위: %)

연번	대학명	2013년도				2012년도 실태조사 등급	비 고
		실태조사 등급	적용비율	감률 (참여제한)	최종비율		
1	강남대학교	C	10	-	10.00	B	
2	건양대학교	B	15	-	15.00	B	
3	경기과학기술대학교	C	10	△0.10	9.90	C	
4	경남과학기술대학교	A	20	-	20.00	A	
5	경운대학교	B	15	-	15.00	-	'13년 신규참여
6	경인교육대학교	B	15	-	15.00	B	
7	경인여자대학교	D	5	-	5.00	D	
8	경주대학교	C	10	-	10.00	D	
9	경희사이버대학교	C	10	-	10.00	D	
10	계명문화대학	D	5	-	5.00	D	
11	계원예술대학교	D	5	-	5.00	D	
12	고려사이버대학교	D	5	-	5.00	D	
13	고신대학교	D	5	-	5.00	-	'13년 신규참여
14	공주교육대학교	D	5	-	5.00	D	

연번	대학명	2013년도				2012년도 실태조사 등급	비 고
		실태조사 등급	적용비율	감률 (참여제한)	최종비율		
15	관동대학교	A	20	-	20.00	B	
16	광주교육대학교	B	15	-	15.00	B	
17	광주대학교	B	15	-	15.00	B	
18	광주여자대학교	B	15	-	15.00	B	
19	국방대학교	D	5	-	5.00	-	'13년 신규참여
20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D	5	-	5.00	D	
21	극동대학교	D	5	-	5.00	D	
22	금강대학교	B	15	-	15.00	B	
23	금오공과대학교	A	20	△0.25	19.75	A	
24	김천대학교	D	5	-	5.00	D	
25	나사렛대학교	A	20	-	20.00	B	
26	남부대학교	B	15	△0.10	14.90	C	
27	남서울대학교	B	15	-	15.00	B	
28	대구과학대학교	D	5	-	5.00	D	
29	대구교육대학교	B	15	-	15.00	B	
30	대구보건대학교	C	10	-	10.00	C	
31	대림대학교	D	5	-	5.00	D	
32	대원대학교	D	5	-	5.00	D	
33	대진대학교	A	20	-	20.00	A	
34	덕성여자대학교	A	20	-	20.00	A	
35	동덕여자대학교	B	15	-	15.00	C	
36	동명대학교	A	20	-	20.00	A	
37	동서대학교	A	20	-	20.00	A	
38	동신대학교	A	20	△0.10	19.90	A	
39	동양대학교	B	15	-	15.00	B	
40	동양미래대학교	D	5	-	5.00	D	

연번	대학명	2013년도				2012년도 실태조사 등급	비 고
		실태조사 등급	적용비율	감률 (참여제한)	최종비율		
41	동원대학교	D	5	-	5.00	D	
42	동의과학대학교	C	10	-	10.00	C	
43	명지전문대학	C	10	-	10.00	C	
44	목원대학교	B	15	-	15.00	D	
45	목포해양대학교	B	15	-	15.00	B	
46	백석대학교	C	10	△0.10	9.90	B	
47	백석문화대학교	B	15	-	15.00	B	
48	부산가톨릭대학교	C	10	-	10.00	-	'13년 신규참여
49	부산교육대학교	D	5	-	5.00	D	
50	부산장신대학교	D	5	-	5.00	D	
51	부천대학교	D	5	-	5.00	D	
52	북한대학원대학교	C	10	-	10.00	D	
53	삼육대학교	B	15	-	15.00	A	
54	상지대학교	A	20	-	20.00	A	
55	서경대학교	B	15	△0.25	14.75	B	
56	서남대학교	C	10	-	10.00	C	
57	서울교육대학교	A	20	-	20.00	A	
58	서울디지털대학교	D	5	-	5.00	D	
59	서울시립대학교	A	20	△0.10	19.90	A	
60	서울여자대학교	A	20	△0.10	19.90	A	
61	서원대학교	B	15	-	15.00	D	
62	서일대학교	C	10	-	10.00	D	
63	서정대학교	C	10	-	10.00	B	
64	선문대학교	A	20	-	20.00	A	
65	성결대학교	D	5	-	5.00	C	
66	성공회대학교	B	15	-	15.00	B	
67	성산호대학원대학교	D	5	-	5.00	-	'13년 신규참여

연번	대학명	2013년도				2012년도 실태조사 등급	비 고
		실태조사 등급	적용비율	감률 (참여제한)	최종비율		
68	성신여자대학교	A	20	-	20.00	A	
69	세명대학교	A	20	-	20.00	A	
70	세한대학교	D	5	-	5.00	D	
71	수성대학교	C	10	-	10.00	C	
72	수원대학교	D	5	△0.66	4.34	D	
73	순천대학교	A	20	△0.50	19.50	A	
74	순천향대학교	A	20		20.00	B	
75	신라대학교	B	15		15.00	B	
76	안양대학교	C	10		10.00	C	
77	연성대학교	D	5		5.00	D	
78	영남이공대학교	B	15	△0.10	14.90	B	
79	영동대학교	D	5	-	5.00	D	
80	영산대학교	A	20	-	20.00	B	
81	예수대학교	D	5	-	5.00	-	'13년 신규참여
82	오산대학교	D	5	-	5.00	-	'13년 신규참여
83	용인대학교	B	15	-	15.00	B	
84	우석대학교	B	15	△0.10	14.90	B	
85	위덕대학교	C	10	-	10.00	C	
86	을지대학교	B	15	△0.40	14.60	B	
87	인하공업전문대학	B	15	-	15.00	C	
88	장로회신학대학교	C	10	-	10.00	C	
89	전남과학대학교	C	10	-	10.00	C	
90	전남도립대학교	D	5	-	5.00	D	
91	전주교육대학교	D	5	-	5.00	D	
92	중원대학교	D	5	-	5.00	D	
93	진주교육대학교	D	5	-	5.00	D	
94	차의과학대학교	A	20	-	20.00	A	

연번	대학명	2013년도				2012년도 실태조사 등급	비 고
		실태조사 등급	적용비율	감률 (참여제한)	최종비율		
95	천안연암대학	D	5	-	5.00	D	
96	청운대학교	C	10	△0.10	9.90	B	
97	청주교육대학교	B	15	-	15.00	C	
98	청주대학교	B	15	△0.10	14.90	B	
99	초당대학교	D	5	-	5.00	-	'13년 신규참여
100	춘천교육대학교	B	15	-	15.00	B	
101	침례신학대학교	D	5	-	5.00	D	
102	평택대학교	D	5	-	5.00	D	
103	한경대학교	A	20	-	20.00	B	
104	한국교원대학교	A	20	-	20.00	A	
105	한국국제대학교	C	10	-	10.00	C	
10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A	20	-	20.00	A	
10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A	20	-	20.00	-	'13년 신규참여
108	한국복지대학교	D	5	-	5.00	-	'13년 신규참여
109	한국산업기술대학교	A	20	-	20.00	B	
110	한국성서대학교	D	5	-	5.00	D	
111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D	5	-	5.00	-	'13년 신규참여
112	한국체육대학교	B	15	-	15.00	B	
113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D	5	-	5.00	D	
114	한동대학교	A	20	-	20.00	C	
115	한라대학교	C	10	-	10.00	C	
116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C	10	-	10.00	D	
117	한림성심대학교	C	10	-	10.00	D	
118	한서대학교	B	15	△0.10	14.90	B	
119	한성대학교	C	10	-	10.00	C	
120	한신대학교	B	15	-	15.00	-	'13년 신규참여

연번	대학명	2013년도				2012년도 실태조사 등급	비 고
		실태조사 등급	적용비율	감률 (참여제한)	최종비율		
121	한양사이버대학교	B	15	-	15.00	C	
122	한양여자대학교	B	15	-	15.00	D	
123	한일장신대학교	B	15	-	15.00	C	
124	협성대학교	D	5	△0.10	4.90	-	'13년 신규참여
125	호남대학교	B	15	-	15.00	B	
126	호서대학교	A	20	-	20.00	A	
127	흥익대학교	A	20	-	20.00	A	

※ '13년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미신청 대학은 간접비 비율 3% 일괄적용

**참고 2****대학별 참여제한 현황(2011.1.1. ~ 2012.12.31.)**

□ 작성기준

- 참여제한 제재기간 시작일이 대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감률적용
- 대상기간: 2011.1.1 ~ 2012.12.31

※ 참고사항: '12년도 간접비 비율 원가계산 산출기관은 '12년도 산출시 반영된 대상기간 (2011.1.1 ~ 2011.12.31) 제외

□ 2013년도 원가계산에 의한 간접비 비율 적용 희망대학

대학명	부처명	사업명	과 제 명	제재사유	제재기간	제재내용	적용 감률
가천 대학교	교육과학 기술부	줄기세포연구	시스템생물학을 이용한 배아 및 신경줄기세포 분화마커 개발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1.07.28 2013.07.27	참여제한 2년	0.15% 감률
	국토 해양부	첨단도시개발 사업	지능형 도시공간정보 서비스 표준화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2.03 2017.02.02	참여제한 5년	0.50% 감률
가톨릭 대학교	교육과학 기술부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간암관련 유전자와 단백질 발굴을 통하여 새로운 간암 진단 및 예후 판정법 개발	연구결과불량	2011.01.13 2014.01.12	참여제한 3년	0.25% 감률
강원 대학교	소방 방재청	차세대핵심 소방안전기술 개발 사업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위험 분석지표 및 예측 모델 개발	연구결과불량	2011.04.04 2012.04.03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농촌 진흥청	농업공동기술 개발	복합 미생물이 인삼 생육과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1.11.21 2016.11.20	참여제한 5년	0.70% 감률
	국토 해양부	건설기술혁신 사업	산사태 발생 예측 및 피해 저감 기술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3.20 2017.03.19	참여제한 5년	

대학명	부처명	사업명	과 제 명	제재사유	제재기간	제재내용	적용 감률
건국 대학교	지식 경제부	산업기술연구 기반구축사업	i-Fashion 의류기술센터 구축사업	지식재산권의 개인 명의 출원 및 등록	2012.02.28 2013.02.27	참여제한 1년	0.14% 감률
	지식 경제부	국가표준기술 력향상사업	국제 환경규제 대응 표준화 기반구축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2012.08.13 2013.08.12	참여제한 1년	
	지식 경제부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기술 개발	수소 및 연료전지자동차 시스템에 대한 환경전과정 평가(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모니터링 사업)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2012.10.17 2014.10.16	참여제한 2년	0.21% 감률
	지식 경제부	제조기반산업 원천기술개발 사업 (생산기반)	환경부하 및 에너지 저감을 위한 Eco-Mg 생산기반기술 개발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2012.10.29 2013.10.28	참여제한 2년	
경남 대학교	지식 경제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해수담수화를 위한 태양열 집광형 직접-증발 시스템 개발	연구결과불량	2011.06.07 2012.06.06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경북 대학교	중소 기업청	기술혁신개발 사업	물리화학적 흡착에 의한 소취 섬유소재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섬유제품개발	연구결과불량	2012.12.13 2013.12.12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고려 대학교	교육과학 기술부	기본연구지원 사업	e-science를 활용한 글로벌 B 물리연구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2012.02.17 2015.02.16	참여제한 3년	0.25% 감률
공주 대학교	중소 기업청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	특장차의 PM과 NOx 동시 제거장치 개발	연구결과불량	2011.04.15 2014.04.14	참여제한 3년	0.25% 감률
	농림수산 식품부	수출전략기술 개발사업	잠엽생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제품 개발과 수출 마케팅전략	연구결과불량	2011.06.07 2012.06.06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광운 대학교	환경부	토양/지하수 오염 방지 기술개발 사업	맞춤형 중금속 오염부지 조사 및 정화 최적화기법 개발 연구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2011.09.27 2014.09.26	참여제한 3년	0.25% 감률
군산 대학교	중소 기업청	기술혁신개발 사업	번호판과 얼굴 인식을 이용한 차량 출입 통제 시스템	기술료 미납	2012.07.12 2013.07.11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단국 대학교	농림수산 식품부	생명산업기술 개발사업	유전자적중 및 핵이식에 의한 레쉬-니한 증후군 질환모델 복제돼지의 생산	연구결과불량	2011.11.25 2012.11.24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대학명	부처명	사업명	과 제 명	제재사유	제재기간	제재내용	적용 감률
동국 대학교	교육과학 기술부	원자력연구 사업	3차원적 조직공학기법을 이용한 암세포주 시스템에서 중성자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p53 의존적 세포사멸의 새로운 타겟발굴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4.23 2015.04.22	참여제한 3년	0.25% 감률
	중소 기업청	산학연공동기 술개발 지역사업	형산강 수질관리를 위한 u-Environment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연구결과불량	2012.03.13 2013.03.12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동아 대학교	교육과학 기술부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다균파일형태의 연안침식방지 기술개발연구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4.23 2015.04.22	참여제한 3년	0.25% 감률
명지 대학교	중소 기업청	산학연공동기 술개발 지역사업	분진폭발압력방산안전장치 개발	연구결과불량	2012.03.13 2013.03.12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목포 대학교	지식 경제부	전력산업융합 원천기술개발	근거리 무선전력전송용 고주파 인버터 개발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8.14 2015.08.13	참여제한 3년	0.25% 감률
부경 대학교	교육과학 기술부	지역혁신인력 양성사업	유비쿼터스 콘텐츠를 위한 서비스프레임워크 개발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2.17 2017.02.16	참여제한 5년	0.50% 감률
	국토 해양부	첨단도시개발 사업	시공장비(기계화시공) 국산화를 위한 핵심요소기술 개발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2.03 2015.02.02	참여제한 3년	0.25% 감률
부산 대학교	중소 기업청	기술혁신개발 사업	사용자 창조형 모바일 콘텐츠 제작기술 개발	기술료 미납	2012.09.13 2013.09.12	참여제한 1년	0.14% 감률
	중소 기업청	구매조건부신 제품개발사업	다층 PCB 무금형 외형가공용 마이크로위터렛 시스템 개발	연구결과불량	2012.10.12 2013.08.09	참여제한 1년	
	농림수산 식품부	생명산업기술 개발사업	사향쥐 추출물을 이용한 바이오신약 소재 개발	연구결과불량	2012.11.23 2015.11.22	참여제한 3년	0.25% 감률
서강 대학교	교육과학 기술부	WCU육성 사업	형질다양화 및 항생제내성 조절을 위한 녹농균 산화환원반응회로 발굴	연구결과불량	2011.12.12 2012.12.11	참여제한 1년	0.14% 감률
	교육과학 기술부	WCU육성 사업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구결과불량	2011.12.12 2012.12.11	참여제한 1년	
서울과학 기술 대학교	지식 경제부	공통핵심기술 개발사업	X선을 이용한 초다층 인쇄회로기판 기준홀 가공장치 개발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1.12.29 2014.12.28	참여제한 3년	0.25% 감률

대학명	부처명	사업명	과 제 명	제재사유	제재기간	제재내용	적용 감률
서울 대학교	농림수산 식품부	첨단생산기술 개발	축산 현장에서 살모넬라 제어 기술 개발을 통한 안전 축산물 생산모델 개발	연구결과불량	2012.10.30 2013.10.29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연세 대학교	교육과학 기술부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구강악안면 경조직재생을 위한 세라믹/고분자생체재료 연구 등 2과제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4.03 2015.04.02	참여제한 3년	0.50% 감률
	교육과학 기술부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전도성 고분자 나노섬유를 이용한 3차원 복합구조 패턴기술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4.03 2015.04.02	참여제한 3년	
	교육과학 기술부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대사성·면역계통 질환 치료를 위한 천연 핵수용체 리간드 개발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4.03 2015.04.02	참여제한 3년	
	교육과학 기술부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고감도 나노바이오센서 및 진단키트 개발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9.12 2017.09.11	참여제한 5년	0.70% 감률
	교육과학 기술부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컴퓨터를 이용한 단백질기능제어 물질 모델링/설계 및 최적화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4.03 2017.04.02	참여제한 5년	
울산 대학교	교육과학 기술부	WCU육성 사업	해양재생에너지 활용연구	연구결과불량	2011.12.12 2012.12.11	참여제한 1년	0.14% 감률
	교육과학 기술부	WCU육성 사업	공통자극분자 표적 면역치료	연구결과불량	2011.12.12 2012.12.11	참여제한 1년	
원광 대학교	지식 경제부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	도로 사용자와 Communication이 가능한 다기능 LED 시선 유도 장치	연구결과불량	2012.10.19 2013.10.18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과학 기술부	WCU사업	적극적 평화로 가는 길: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평화와 한국의 역할	연구결과불량	2012.04.03 2013.04.02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인제 대학교	농림수산 식품부	농림기술개발 사업	장군차의 항당뇨효과 규명 및 혈당조절용 제품의 개발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2012.01.30 2015.01.29	참여제한 3년	0.25% 감률

대학명	부처명	사업명	과 제 명	제재사유	제재기간	제재내용	적용 감률
인천 대학교	국토 해양부	교통체계효율 화사업	대중교통 환승 스케줄링 기술동향 분석 및 알고리즘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6.13 2016.06.12	참여제한 4년	0.80% 감률
	국토 해양부	교통체계 효율화사업	교통상충 유형 판단 알고리즘 및 교통안전 대안효과분석 모형 개발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6.13 2016.06.12	참여제한 4년	
	국토 해양부	교통체계효율 화사업	사고정보 분석 및 도로환경 안전성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6.13 2016.06.12	참여제한 4년	
	국토 해양부	첨단도시개발 사업	입체 복합 매개공간계획 및 설계 매뉴얼 개발 및 입체환승체계 구축매뉴얼개발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6.13 2016.06.12	참여제한 4년	
인하 대학교	교육과학 기술부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도약연구)	마이크로파 합성 나노구조 촉매에 의한 그린 화학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1.06.01 2012.05.31	참여제한 1년	0.20% 감률
	교육과학 기술부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도약연구)	자극감응형 자기조립 덴드론 나노튜브의 합성 및 고기능화 연구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1.06.01 2012.05.31	참여제한 1년	
	교육과학 기술부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핵심연구)	특수중합법을이용한 신계념 나노하이브리드 소재의 제조 구조 제어 및 응용연구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1.06.01 2012.05.31	참여제한 1년	
	교육과학 기술부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핵심연구)	난류장내에서의 DNA의 나류 마찰 저항감소 및 구조변화 연구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1.06.01 2012.05.31	참여제한 1년	
	중소 기업청	산학연공동 기술개발 지역사업	설치형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개요	연구결과불량	2012.03.13 2013.03.12	참여제한 1년	
	농림수산 식품부	생명산업기술 개발사업	제2형 당뇨 임상 선행 모델의 유효성평가 시스템 개발	연구결과불량	2012.11.23 2013.11.22	참여제한 1년	
전남 대학교	교육과학 기술부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Zebrafish를 이용한 종양유발 물질 검출방법	연구결과불량	2011.10.18 2012.10.17	참여제한 1년	0.14% 감률
	중소 기업청	산학연공동 기술개발 지역사업	산업용 육방향 밸브 자동화 시스템 개발	연구결과불량	2012.03.13 2013.03.12	참여제한 1년	

대학명	부처명	사업명	과 제 명	제재사유	제재기간	제재내용	적용 감률
전북 대학교	교육과학 기술부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재생의학적 망막재생용 신기능성 생분해성 고분자지지체 연구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2011.03.03 2012.03.02	참여제한 1년	0.14% 감률
	중소 기업청	기술혁신개발 사업	석재 곡선 및 다각 형태 절단 장치 개발	연구결과불량	2012.05.10 2013.05.09	참여제한 1년	
전주 대학교	농림수산 식품부	생명산업기술 개발사업	친환경 자주시 복분자 가지 전정 및 파쇄 복합시스템 개발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1.09.21 2014.09.20	참여제한 3년	0.35% 감률
	소방 방재청	차세대핵심 소방안전기술 개발	친환경 방염제 및 방염처리 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5.24 2015.05.23	참여제한 3년	
	지식 경제부	CFC대체 실용화기술 개발사업	할론대체 신규 가스계 고체에어로졸 소화시스템 개발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2012.05.16 2013.05.15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제주 대학교	교육과학 기술부	지역혁신인력 양성사업	u-제주를 위한 유비쿼터스환경지원 지능형 미들웨어기술 개발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1.12.12 2015.12.11	참여제한 4년	0.40% 감률
	교육과학 기술부	지방대학혁신 역량강화사업	대형해산어 수족관에서의 순환여과시스템에 의한 수산용수 관리기술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2.17 2015.02.16	참여제한 3년	
	환경부	연구사업	제주형 양돈시설 및 양돈분뇨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을 위한 실증연구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1.10.04 2014.10.03	참여제한 3년	0.50% 감률
	지식 경제부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R&D)	그린오션(GreenOcean)농법 을 위한 U-IT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1.31 2015.01.30	참여제한 3년	
	지식 경제부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R&D)	농수축산지원 USN 요소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1.31 2017.01.30	참여제한 5년	
조선 대학교	교육과학 기술부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자기공명영상과 자기공명분광법을 이용한 망막모세포종의 분자생물학적 변화의 생체내 영상화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4.03 2015.04.02	참여제한 3년	0.25% 감률

대학명	부처명	사업명	과 제 명	제재사유	제재기간	제재내용	적용 감률
중앙 대학교	교육과학 기술부	기본연구지원 사업	초고층건물의 신재생에너지적용을 위한 통합설계기술 개발 등 2개과제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2012.02.17 2015.02.16	참여제한 3년	0,35% 감률
	교육과학 기술부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핵심연구)	Retrodirective 배열안테나를 이용한 궤환잡음 상관레이더 연구	연구결과불량	2012.09.12 2015.09.11	참여제한 3년	
	농촌 진흥청	바이오그린21 사업	학습,기억력 향상 및 치매예방 식의약품의 산업화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2011.04.21 2016.04.20	참여제한 5년	0,50% 감률
충남 대학교	교육과학 기술부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특징들의 공유에 의한 실시간 다각도 얼굴검출	연구결과불량	2011.10.18 2012.10.17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충북 대학교	중소 기업청	기술혁신개발 사업	친환경 에너지저감형 어닐링열처리기술 개발	연구결과불량	2012.05.10 2013.05.09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포항공 과대학 교	농림수산 식품부	농림기술개발 사업	식물을 이용한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연구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2011.02.25 2012.02.24	참여제한 1년	0,14% 감률
	교육과학 기술부	WCU사업	노약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휴먼센싱기술 개발	연구결과불량	2012.04.03 2013.04.02	참여제한 1년	
	교육과학 기술부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자세예측과 자세부하평가기법을 이용한 작업의 설계와 평가	연구결과불량	2012.04.03 2015.04.02	참여제한 3년	0,25% 감률
한국 외국어 대학교	교육과학 기술부	학교기업지원 사업	학교기업지원사업 I 외대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2012.07.26 2013.07.25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한양 대학교	교육과학 기술부	선도연구센터 육성사업	양자광기능물성연구센터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2011.02.17 2016.02.16	참여제한 5년	0,50% 감률

□ 2013년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 일괄적용 대학

대학명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기간	제재내용	적용 감률
경기과학기술 대학교	중소 기업청	산학연공동 기술개발 지역사업	교육용 Tabbing & String M/C 개발	연구결과불량	2012.03.13 2013.03.12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금오공과 대학교	국토 해양부	건설기술혁신 사업	분포형 광섬유센서를 활용한 하천제방 유지관리 기술 개발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1.08.31 2014.08.30	참여제한 3년	0.25% 감률
남부 대학교	중소 기업청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단년차)	항균성 고분자 소재의 합성 및 응용성 개발	기술료 미납	2012.12.13 2013.12.12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동신 대학교	문화체육 관광부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기반조성사업	스포츠재활치료용 이중제어 음파 진동 시스템 개발	연구결과불량	2011.10.04 2012.10.03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백석 대학교	중소 기업청	산학연공동 기술개발 지역사업	저 잡음 10GHz대역 센서 송수신기 설계	연구결과불량	2012.03.13 2013.03.12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서경 대학교	교육과학 기술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전략금속 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구축 및 나노산업 응용기술개발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2011.07.28 2014.07.27	참여제한 3년	0.25% 감률
서울시립 대학교	농림수산 식품부	생명산업기술 개발사업	기능성 개별인정을 위한 국내산 상항버섯 (<i>Phellinus baumii</i>) 자실체의 면역기능 증강 규명	연구결과불량	2012.11.23 2013.11.22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서울여자 대학교	환경부	Eco-STAR 사업단 세부과제	수생태 복원에 관한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	연구결과불량	2012.08.23 2013.08.22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수원 대학교	지식 경제부	지역혁신센터 조성사업	환경청정기술연구센터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2.09 2015.02.08	참여제한 3년	0.35% 감률
	교육과학 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지원 사업	풍력비중선별에 의한 혼합폐플라스틱 재질별 분리기술개발 등 2과제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4.23 2015.04.22	참여제한 3년	
	지식 경제부	지역혁신센터 조성사업	전자부품소재지역기술혁신 센터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2.09 2014.02.08	참여제한 2년	0.21%
	지식 경제부	지역혁신센터 조성사업	전자부품소재지역기술혁신 센터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2.09 2014.02.08	참여제한 2년	감률
	지식 경제부	지역혁신센터 조성사업	환경청정기술연구센터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2012.02.09 2013.02.08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대학명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기간	제재내용	적용 감률
순천 대학교	환경부	차세대핵심 환경기술개발 사업	환경친화형 무기성 저온 바인더 개발	기술료 미납	2011.04.01 2013.03.31	참여제한 2년	제제해 제
	지식 경제부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단독주관개발 사업)	건습식 공용 2,500 m ³ /h x 10 ⁻³ torr x 15 kW급 중진공펌프 개발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2012.06.22 2017.06.21	참여제한 5년	0.50% 감률
영남이공 대학	중소 기업청	산학연공동기 술개발사업	USB3.0과 Express Card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SSD기반의 고성능 외장 저장 장치개발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2012.03.19 2013.03.18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우석 대학교	중소 기업청	산학연공동기 술개발 지역사업	자가 인슐린 조절 시스템	연구결과불량	2012.03.13 2013.03.12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을지 대학교	교육과학 기술부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위암의 항암치료에서 GSK-3β의 역할에 대한 연구	연구결과불량	2012.04.03 2015.04.02	참여제한 3년	0.25% 감률
	식품의약 품안전청	의약품등안전 관리	단약 동기증진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2012.08.09 2014.08.08	참여제한 2년	0.15% 감률
청운 대학교	중소 기업청	기술혁신개발 사업	사출성형에 의한 인공소비를 갖춘 개량벌통 개발	연구결과불량	2012.07.12 2013.07.11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청주 대학교	지식 경제부	지역혁신센터 조성사업	정보통신연구센터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2011.03.25 2012.03.24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한서 대학교	중소 기업청	산학연공동 기술개발 지역사업	항균성과 내화성이 보강된 공조용 소재개발	연구결과불량	2012.03.13 2013.03.12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협성 대학교	환경부	환경시책 효율성 제고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계획기술 설계 및 적용 모델 개발	연구결과불량	2012.03.19 2013.03.18	참여제한 1년	0.10% 감률

※ 대학 참여제한 세부 적용기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저술출판지원사업 등 공동관리규정 미적용 사업은 제외

【첨부 1】

간접비 비율 산출시 검토·조정기준

가. 연구수익비율의 산정기준

□ 국립대학의 연구수익비율 산정기준

- 교육수익은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상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수익총계
 - － 기성회계의 기성회비, 단기수강료,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의 교육운영수익 등이 해당
 - － 국고회계에서의 입학료와 수업료는 국고에 세입 조치하고 있어 교육 수익에서 제외
 - － 학비 감면 부분 차감
- 연구수익은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 용역 성격의 금액
 - － 연구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외부기관에서 대학에 지원된 각종 경비
 -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상 산학협력연구수익, 연구용역계약에 의한 연구수익 등
 - － HRD성격의 사업(BK21, NURI,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특성화지원사업만 해당)은 연구수익 인정항목에서 제외
- 연구수익 확인서류
 - － 회계 결산서 일체
 - － 회계 결산서 외에 사업별로 관리하는 경우, 학교자체의 연구수익 확인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작성자 날인, 산학협력단장 날인 및 공식화된 문서(공문), 통계자료집 제출
 - － 각 대학별 전산화 장표가 있을 경우, 공문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산화 장표로써 연구수익 세부내역을 인정

□ 사립대학의 연구수익비율 산정기준

- 교육수익은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상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수익총계
 - － 특례규칙상의 등록금수입, 단기수강료,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의 교육운영수익 등

- 학비 감면 부분 차감
- 연구수익은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 용역 성격의 금액
 - 교비회계에서의 연구기부금 수입,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서 산학협력연구수익, 연구용역계약에 의한 연구수익 등이 해당
 - HRD성격의 사업(BK21, NURI,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특성화지원사업만 해당)은 연구수익 인정항목에서 제외
- 연구수익 확인서류
 - 회계 결산서 일체
 - 회계 결산서 외에 사업별로 관리하는 경우, 학교자체의 연구수익 확인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작성자 날인, 산학협력단장 날인 및 공식화된 문서(공문), 통계자료집 제출
 - 각 대학별 전산화 장표가 있을 경우, 공문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산화 장표로써 연구수익 세부내역을 인정

나. 연구부문과 공통부문과의 구분

- 연구부문: 연구수행 등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연구부서와 연구부서를 전담 지원하는 연구지원 부서
 - 연구부서: 산학협력단 사업부서, △△연구소, OO센터, XX 연구단 등
 - 연구지원부서: 산학협력단 관리부서, △△ 연구소 관리부서
- 공통부문: 교육과 연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부서인 교육 및 연구부서와 교육과 연구를 공통으로 지원하는 공통지원부서
 - 교육 및 연구부서: 대부분의 단과대학 (※ 최소단위로 작성하여 제출)
 - 공통지원부서: 각 대학의 학과 행정실 등 교육과 연구를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서
 - 각 대학, 대학원의 학과, 행정실의 경우 '12년 결산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실적이 전혀 없을 경우 공통부문에서 제외

- 연구수익비율이 30%* 이상인 대학의 공통부문 인건비 인정부서 중 총무인사 및 주거운영부서의 인건비 추가 설정

공통부문 인정부서	
연구수익비율	인정부서
30% 이상	각 대학, 대학원의 학과 및 행정실, 중앙도서관, 중앙전산원, 중앙기기센터, 재무회계팀, 구매팀, 검수팀, 시설(관리)팀, 관재과, 기계공작실, 의과대학의 00교실, 총무인사팀, 주거운영팀
30% 미만	각 대학, 대학원의 학과 및 행정실, 중앙도서관, 중앙 전산원, 중앙기기센터, 재무회계팀, 구매팀, 검수팀, 시설(관리)팀, 관재과, 기계공작실, 의과대학의 00교실

다. 인건비 계산: 연구부문 및 공통부문 참여인력 구분·계산

- 소속부서에 따라 실지급 인건비로 구분
 -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및 연구비 지급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등 직종과 관계없이 소속부서를 기준으로 함
 - 부서 구분이 세분화되어있지 않을 경우는 담당 업무 기준으로 분류하여, 해당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만 인정
- 연구행정 전담 인력 인건비는 연구부문으로 인정
 -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 전담인력 인건비의 경우 소속 연구부서를 기준으로 연구부문으로 인정
 - ※ 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 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연구행정 전담인력 인건비가 인정되므로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해야 함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5항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참조)
- 국립대학의 경우 국고회계에서 지원받는 인건비는 제외
 - 국립대학은 기성회계 및 산학협력단의 참여인력 인건비 계상

- 공통부문 참여인력 인건비의 배분기준
 - 교육과 연구를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공통부문의 참여인력 인건비를 연구수익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 연구과제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대학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연구원, 기술원, 행정원 등 포함
 - 교원의 인건비는 직접비 중 인건비 항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간접비 계상 시 불인정
 - 인건비 확인서류
 - 부서별로 연구부문, 교육부문, 공통부문으로 구분하여 결산서, 급여대장, 연구비 대장 등의 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
 - 회계단위별(기성회, 교비, 산학협력단), 부서별, 인건비 확인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확인서류를 작성
 - 인건비 증가요인 소명 점검
 - 공통부문 인건비 신청년도 증가율이 신청년도(2012 회계연도) 직전 2년간(2010년 및 2011년 회계연도) 공통부문 인정 소속부서 인건비 평균 지출액의 30% 이상 증가 시 산출 근거 제시하여 소명
 - 지난 1년간만 참여한 대학 또는 '13년도에 신규 신청대학도 2010, 2011, 2012회계연도 당시 부서를 '12년 인정부서 기준으로 분류하여 신청년도(2012 회계연도) 증가율이 직전 2년간(2010년 및 2011년 회계연도) 공통부문 인정 소속부서 인건비 평균 지출액의 30% 이상 증가 시 산출 근거 제시하여 소명
 - 단, 설립 이후 5년 이내(2007년 이후 설립)의 신설대학 또는 대학이 통폐합된 경우는 예외로 함
- * 향후 대학별 실태조사를 통해 인건비 평균 지출액 기준 하향 조정 예정

라. 연구진흥경비

- 간접비 집행용도 규제완화에 따라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
 - － (간접비 중) 대학 연구활동지원금, 연구실 안전관리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보안관리비, 과학문화활동비를 재원으로 하여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제비용
- 연구진흥경비는 연구부문 간접비로 인정, 다만 정부와 협약한 연구개발과제 중 직접비에서 지원받아 대학에서 연구부문 직접비로 지출한 금액은 제외하고 신청
- 연구진흥경비의 계정과목별 인정기준
 - － 연구진흥경비의 계정항목 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의 경우 기존 관리운영비 및 산학협력비의 지식재산권 운영·이전비 계정과목으로 대체
 - ※ 단, 지식재산권 운영·이전비를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소명하였을때 인정 가능
 - － 대학연구활동 지원금,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과학문화활동비의 경우 기존 관리운영비 계정항목이나 연구관리비 계정 등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제출 시 인정
 - － 당기에 지출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관련 비용으로서 최초 특허 출원·등록·유지비 또는 최초 특허 등록 기간 종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특허의 유지비만 인정됨에 유의하여 제출

마.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대학 자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성과급 지급시 소속부서의 인건비로 인정
 -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시 소속부서 인건비로 계상하고(기타소득 등) 소속부서에 따라 연구부문과 공통부문으로 인정
- 대학 자체 규정 제정시 목적, 산정기준, 지급형태 등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간접비율 산출시 관련 규정을 제출하도록 함

바. 관리운영비

-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관리운영비
- 관리운영비 중 연구수익비율에 해당되는 금액만 계상
- 행정관리운영비의 증가요인 소명 점검
 - － 행정관리운영비 신청년도 증가율이 신청년도(2012 회계연도) 직전 2년간(2010년 및 2011년 회계연도) 공통부문 인정 행정관리운영비 평균 지출액의 30% 이상 증가 시 산출 근거 제시하여 소명
 - － 지난 1년간만 참여한 대학 또는 '13년도에 신규 신청대학교 2010, 2011, 2012 회계연도 당시 부서를 '12년 인정부서 기준으로 분류하여 신청년도(2012 회계연도) 증가율이 직전 2년간(2010년 및 2011년 회계연도) 공통부문 인정 행정관리운영비 평균 지출액의 30% 이상 증가 시 산출 근거 제시하여 소명
 - ※ 행정관리운영비 증가 시 산출근거 자료로 대상연도 재무제표 및 세부내역이 있는 관련 행정관리운영비 회계원장 등을 기준으로 소명
 - － 단, 설립 이후 5년 이내(2007년 이후 설립)의 신설대학 또는 대학이 통폐합된 경우는 예외로 함
 - * 향후 대학별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관리운영비 증가요인 소명점검을 위한 기준 강화
- 시설관리운영비는 비목별 원가항목 인정
 - － 시설관리운영비는 시설관리비를 기본적 원가항목으로 구성하되 연구수익비율에 근거하여 원가인정
- 국립대학 관리운영비 계상 시 참고사항
 - － 기성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 중 아래 관리운영비 항목을 참고하여 계상
 - － 국립대학의 국고회계에서 지출되는 운영비, 시설비 및 시설운영비 제외
 - － 국립대학 기성회계에서 지출되는 항목 중 경상보조금의 세부항목이 행정관리운영비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하여 계상

< 국립대학 관리운영비 항목 >

2012년		
항목구분	인정항목	불인정항목
I. 행정 관리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비 • 여비 • 복리후생비 • 교육훈련비 • 세금과 공과 • 소모품비 • 출판인쇄비 • 지급수수료 • 회의비 • 홍보비 • 기타 일반관리비 • 경상보조금 <p>* 세부 항목을 확인하여 행정 관리 운영비 항목으로 인정되는 세부항목만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추진비 • 교육과정개발비 • 실험실습비 • 기타교육운영비 • 교육지원비 • 연구개발비(연구보조비) • 학술활동보조비 • 학교회계전출금 • 보상금 • 배상금 • 출연금 • 퇴직충당금
II. 시설 관리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비 • 시설부대비 <p>*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의 경우 자산성 취득비용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방비 • 수선비 • 리스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유지비(운반비) • 자산 취득비 • 토지매입비 • 예비비 • 수입대체경비 • 특별사업비

○ 사립대학 관리운영비 계상시 참고사항

—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 중 아래 관리운영비 항목을 참고하여 계상

< 사립대학 관리운영비 항목 >

2012년		
항목구분	인정항목	불인정항목
I. 행정 관리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교통비 • 소모품비 • 통신료 • 세금과 공과 • 인쇄출판비 • 지급수수료 • 복리후생비 • 교육훈련비 • 일반용역비 • 홍보비 • 회의비 • 기타 관리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비 • 업무추진비
II. 시설 관리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등 관리비 • 시설용역비 • 보험료 • 임차료 • 기타시설관리비 • 난방비 • 전기수도료 • 수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유지비 • 조경관리비

○ 관리운영비 확인서류

- 회계 결산서에 없는 항목에 대해 해당 계정과목별 내역집계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뢰성 확인을 위해 작성자 및 산학협력단장 날인 등 공식화된 문서(공문)로 제출
- 회계검증 시 해당부분에 대한 세부 증빙철을 확인
-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자본적지출(건설비, 시설비)의 경비는 제외
- 관리운영비 항목 분류는 관리운영비 내역을 기본으로 하되 유사계정항목은 관리운영비 계정과목의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여 표시
- 간접비 중 연구진흥경비(대학연구활동지원금,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관리운영비 항목으로 지원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류하여 제출할 경우 관리운영비 항목에서 제외하고 연구부문 지원경비로 인정, 단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비에 편성·집행된 금액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함

- 지식재산권 운영 이전비는 연구진흥경비로 이관하여 연구부문지원 경비로 인정

사. 조정비율

- 연구관리인증기관 인증 시, 간접비율 추가 인정(3%p 가율)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은 간접비 비율에서 3%p 가율 적용
- 연구비 중앙관리 원칙에 따라 간접비 비율 인정범위 조정(3%p 감률)
 - 연구비 중앙관리 원칙: 연구비 관리의 총장(산학협력단장)책임, 연구와 행정의 분리 등 총장(산학협력단장)이 연구비를 법적·경제적·사회적 책임 하에 직접 관리함을 의미
 - 원가계산방식과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등급과의 연계: 중앙관리 실태조사 등급(B등급 이상)을 원가계산방식의 신청자격요건으로 하고, B등급은 간접비 비율에서 3%p 감률 적용

【첨부 2】

2013년도 대학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 세부기준 요약표

○ 항목별 인정기준

	인정 항목	불인정 항목
연구 부문	산학협력단 사업부서, 00연구소, 00연구단 등, 산학협력단 관리부서, 00연구소 관리부서	
공통 부문	각 대학, 대학원의 학과 및 행정실, 중앙도서관, 중앙전산원, 중앙기기센터, 재무회계팀, 구매팀, 검수팀, 시설(관리)팀, 관재과, 기계공작실, 의과대학의 00교실 [연구수익비율 30% 이상인 경우 총무인사팀, 주거운영팀 추가인정]	대학, 대학원의 학과 및 행정실: 국가R&D 실적이 있는 경우만 인정 ※ 교양학부 교육학과이더라도 연구실적 있는 경우 인정, 대학별로 부서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통부문 인정부서의 업무 담당자 인건비만 인정
교육 부문	연구부문 및 공통부분 인정 외 부서	
관리 운영비	[국립대학] 행정관리운영비 학교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세금과 공과, 소모품비, 출판인쇄비, 지급수수료, 회의비, 홍보비, 기타 일반관리비, 경상보조금* * 세부 항목을 확인하여 행정 관리운영비 항목으로 인정되는 세부항목만 인정	[국립대학] 행정관리운영비 업무추진비, 교육과정개발비, 실험실습비, 기타교육운영비, 교육지원비, 연구개발비 (연구보조비), 학술활동보조비, 학교회계전출금, 보상금, 배상금, 출연금, 퇴직총당금
	[국립대학] 시설관리운영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의 경우 자산성 취득비용은 제외 난방비, 수선비, 리스임차료	차량유지비(운반비), 자산취득비, 토지매입비, 예비비, 수입대체경비, 특별사업비
	[사립대학] 행정관리운영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통신료, 세금과 공과, 인쇄출판비,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일반운영비, 홍보비, 회의비, 기타 관리운영비	[사립대학] 행정관리운영비 행사비, 업무추진비
	[사립대학] 시설관리운영비 건축물 등 관리비, 시설용역비, 보험료, 임차료, 기타시설관리비, 난방비, 전기수도료, 수선비	[사립대학] 행정관리운영비 차량유지비, 조경관리비
교육 수익	[산학협력단회계] 교육운영수익 [교비 또는 기성회계] 단기수강료 [기성회계] 기성회비 [교비회계] 등록금수입(입학료, 수업료)	교육부대수익(수수료 등), 학비감면 [기성회계] 등록금수입(입학료, 수업료)

	인정 항목	불인정 항목
연구 수익	<p>[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수익 중 산학협력연구수익, 기타산학협력연구수익, 보조금수익(전체), 지정기부금 [교비회계] 연구기부금</p>	<p>[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수익 중 산학협력연구수익, 기타산학협력연구수익을 제외한 수익(교육운영수익, 지식재산권운영·이전수익 등), 전입금 수익, 일반기부금, 현물기부금, 운영외 수익 등 HRD 사업비(BK21, NURI,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특성화지원사업) 중 연구개발성격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p>
연구비	<p>[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비(전체) 중 교육운영비, 지식재산 운영·이전비를 제외한 금액, 보조사업비(전체) [교비회계] 연구기부금</p>	<p>[산학협력단회계] 교육운영비*, 지식재산권운영·이전비, 일반관리비, 운영외 비용 등 연구수익에서 제외하였던 HRD 사업(BK21, NURI,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특성화지원사업) 사업비 제외 ※ HRD 연구비의 이중차감을 방지하기 위해, - 교육운영수익이 있는 경우 수익만큼만 차감 - 교육수익이 없는 경우 교육운영비 차감 제외 ※ 연구수익과 연구비는 결산서 기준으로 하며, - 결산서가 없는 경우 연구수익과 연구비를 동일하게 계상 - 일부만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 결산서상 연구수익과 연구비로 인정하고, 별도 관리하는 부분은 연구수익과 연구비를 동일하게 계상</p>

※ 상기 항목은 회계 검증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연구진흥경비 인정기준

	인정 항목	불인정 항목
연구실 안전관리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험료 2. 동법 제18조제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및 건강검진 3.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4.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6.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p>보안업체 비용(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과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불인정)</p>

	인정 항목	불인정 항목
연구보안관 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경비	공동관리규정 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해당하는 '보안'관리비로서,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일반적 성격의 보안장비는 제외(일반적 보안업체 비용)
대학연구활동지원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관련 기반시설운영비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운영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약, 재료비, 수용비 및 수수료(공공요금) 학술대회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지원비,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비 논문게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게재료, 논문교정료, 저서출판비, 논문별쇄본 구입비 등 	자산취득성, 자본적 지출, 장려금성 성격 ※ 학술대회개최시, 패널·사회자 등에 대한 활용비는 인정함 대응자금, 교내연구비(연구보조비), 신임 교수 정착금, 장려금, 장/단기 국내외연수, 도서관에서 구입한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 구입비 ※ 연구부문 인정부서에서 발의한 금액은 증빙 제출 시 인정 동아리(그룹)연구지원금, 저술활동장려금,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될 경우, 제외(연구소, 센터 등의 연구활동지원금) BK21, NURI,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특성화지원사업은 모두 제외 실험실운영지원비 중 인건비, 보험료,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등 경상지출, 학교회계전출금, 장려금(인센티브) 성격의 논문게재료, 실비(영수증)가 아닌 논문게재료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학교나 산학협력단 홍보비, 홍보물품비 등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계정과목 또는 당기에 지출된 지식재산권출원·등록·유지비 또는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특허의 유지비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 초과한 유지비, 발명자(기여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첨부 3】

2013년도 대학별 간접비 비율 산출양식

가. 2013년 국립대학 간접비율 산출 양식

○ 대학명 :

1-1 간접비 및 간접비율

(단위: 천 원)

구 분	I		II		III	IV	V
	(공통부문 간접비)		(연구부문 간접비)		연구수익 비율	연간 연구비	간접비 비율 (V= I +II)
	공통부문 인건비①	관리 운영비②	연구 부문③	연구진행 경비④	⑤	⑥	⑦
비용(비율)	-	-	-			-	

※ 간접비율 = I [(①+②) × ⑤/⑥] + II [(③+④)/⑥]

1-2 ①공통부문 인건비 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비 용	비 고
공통 부문 인건비	급여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계	-

1-3 ②공통부문 관리운영비 내역

(단위: 천 원)

항목구분	국립대학			
	기성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연구진흥경비	계
I. 행정관리운영비	-	-		-
1. 학교운영비				-
2. 여비				-
3. 복리후생비				-
4. 교육훈련비				-
5. 세금과 공과				-
6. 소모품비				-
7. 출판인쇄비				-
8. 지급수수료				-
9. 회의비				-
10. 홍보비				-
11. 기타 일반관리비				-
12. 경상보조금				-
II. 시설관리운영비	-	-		-
1. 시설비				-
2. 시설부대비				-
3. 난방비				-
4. 수선비				-
5. 리스임차료				-
계	-	-		-

※ 관리운영비는 기성회계, 산학협력단회계규칙상의 관리운영비 비목항목을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계상

1-4 ③ 연구부문 인건비 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비 용	비 고
연구 부문 인건비	급여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계	-	

1-5 ④ 연구진흥경비 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비 용	비 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대학연구활동 지원금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과학문화활동비		
계	-	

1-6 ⑤ 연구수익비율의 계산 기준

(단위: 천 원)

교육수익(A)	연구수익(B)	계(C=A+B)	연구수익비율(D=B/C)
-	-	-	

1-7 ⑥연간 연구비

※ 연간 연구비는 당해 연도에 대학이 지출한 연구비 총액을 기입

(단위: 천 원)

구 분	내역	비 용	비 고
산단회계	산학협력비		
	지원사업비		
	차감		
	교육운영비(산학협력비)		
	지식재산권운영이전비		
	HRD 사업(BK21, NURI,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 대학특성화지원사업)		
기타			
계		-	

※ 계정과목은 각 대학 회계결산서 기준에 맞추어 작성

1-8 공통부문 행정관리운영비 증가율

(천 원, %)

구 분	2010년(a)	2011년(b)	계(c=a+b)	평균액 (d=c/2)	2012년 (e)	증가율 (f=e/d-1)	비 고
공통부문 대상 행정관리운영비 금액			-	-			

1-9 공통부문 인건비 증가율

(천 원, %)

구 분	2010년 (a)	2011년(b)	계 (c=a+b)	평균액 (d=c/2)	2012년 (e)	증가율 (f=e/d-1)	비 고
공통부문 대상 인건비 금액			-	-			

1-10 감점내역

번호	항 목	비율(%)	내 역
1			
2			
3			
합 계			

예)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 및 부당자료 제출 사후적발 기관

회계구분	구분	부서	급여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등	인건비 계	
산학협력단 회계	연구부문						-	
							-	
		소계	-	-	-		-	
	공통부문							-
								-
		소계	-	-	-		-	
	교육부문							-
								-
		소계	-	-	-		-	
계			-	-	-		-	
기타회계	연구부문						-	
							-	
		소계	-	-	-		-	
	공통부문							-
								-
		소계	-	-	-		-	
	교육부문							-
								-
		소계	-	-	-		-	
계			-	-	-		-	
합 계			-	-	-		-	

※ 참고

기성회계(인건비 부담) 직원: 명, 산학협력단 회계(인건비 부담) 직원: 명,
기타회계(인건비 부담) 직원: 명

3-2 연구수익 산출내역

(단위: 천 원)

회계구분	계정과목	금액	비고
산학협력단 회계	산학협력연구수익		
	기타연구수익		
	소계	-	
기타회계			
	소계	-	
계	-		

※ 계정과목은 각 대학 회계결산서 기준에 맞추어 작성

3-3 연구수익 세부 산출내역

※ 결산서상 계정과목별 연구수익내역을 엑셀로 전환·작성/ 연구수익 사업별 비교란에 HRD사업(BK21,NURI,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특성화지원사업만 해당)명을 반드시 기재

나. 2013년 사립대학 간접비 비율 산출 양식

○ 대학명 :

1-1 간접비 및 간접비율

(단위: 천 원)

구분	I		II		III	IV	V
	(공통부문 간접비)		(연구부문 간접비)		연구수익 비율	연간 연구비	간접비 비율(V= I + II)
	공통부문 인건비①	관리 운영비②	연구 부문③	연구진흥 경비④	⑤	⑥	⑦
비용 (비율)	-	-	-			-	

※ 간접비율 = I [(①+②) × ⑤/⑥] + II [(③+④)/⑥]

1-2 ①공통부문 인건비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비용	비고
공통 부문 인건 비	급여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연구개발능력률성과급	
	계	-

1-3 ②공통부문 관리운영비 내역

(단위: 천 원)

항목구분	사립대학			
	교비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연구진흥경비	계
I. 행정관리운영비	-	-		-
1. 여비교통비				-
2. 소모품비				-
3. 통신료				-

항목구분	사립대학			
	교비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연구진흥경비	계
4. 세금과 공과				-
5. 인쇄출판비				-
6. 지급수수료				-
7. 복리후생비				-
8. 교육훈련비				-
9. 일반용역비				-
10. 홍보비				-
11. 회의비				-
12. 기타 관리운영비				-
II. 시설관리운영비	-	-		-
1. 건축물 등 관리비				-
2. 시설용역비				-
3. 보험료				-
4. 임차료				-
5. 기타시설관리비				-
6. 난방비				-
7. 전기수도료				-
8. 수선비				-
계	-	-		-

※ 관리운영비는 특례규칙 및 산학협력단회계규칙상의 관리운영비 비목항목을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계상

1-4 ③연구부문 인건비 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비 용	비 고
연구 부문 인건비	급여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연구개발능력성과급		
	계	-	

1-5 ④연구진흥경비 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비 용	비 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대학연구활동 지원금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과학문화활동비		
계	-	

1-6 ⑤연구수익비율의 계산 기준

(단위: 천 원)

교육수익(A)	연구수익(B)	계(C=A+B)	연구수익비율(D=B/C)
-	-	-	

1-7 ⑥연간 연구비

※ 연간 연구비는 당해 연도에 대학이 지출한 연구비 총액을 기입

(단위: 천 원)

구 분	내 역	비 용	비 고
산단회계	산학협력비		
	지원사업비		
	차감		
	교육운영비(산학협력비)		
	지식재산권운영이전비		
	HRD 사업(BK21, NURI,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특성화지원사업)		
교비회계	연구기부금수익		
계		-	

※ 계정과목은 각 대학 회계결산서 기준에 맞추어 작성

1-8 공통부문 행정관리운영비 증가율

(천 원, %)

구 분	2010년(a)	2011년(b)	계 (c=a+b)	평균액 (d=c/2)	2012년(e)	증가율 (f=e/d-1)	비고
공통부문 대상 행정관리 운영비 금액			-	-			

1-9 공통부문 인건비 증가율

(천 원, %)

구 분	2010년(a)	2011년(b)	계(c=a+b)	평균액 (d=c/2)	2012년 (e)	증가율 (f=e/d-1)	비고
공통부문 대상 인건비 금액			-	-			

1-10 감점내역

번호	항 목	비율(%)	내 역
1			
2			
3			
합 계			

예)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 및 부당자료 제출 사후적발 기관

회계구분	구분	부서	급여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연구개발능률 성과급등	인건비 계
산학협력단 회계	연구부문						-
							-
		소계	-	-	-		-
	공통부문						-
							-
		소계	-	-	-		-
	교육부문						-
							-
		소계	-	-	-		-
계		-	-	-		-	
기타회계	연구부문						-
							-
		소계	-	-	-		-
	공통부문						-
							-
		소계	-	-	-		-
	교육부문						-
							-
		소계	-	-	-		-
계		-	-	-		-	
합 계		-	-	-		-	

※ 참고 - 교비회계(인건비 부담) 직원: 명, 산학협력단 회계(인건비 부담) 직원: 명

3-3 연구수익 세부 산출내역

- ※ 결산서상 계정과목별 연구수익내역을 엑셀로 전환·작성 / 연구수익 사업별 비교란에 HRD사업(BK21,NURI,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특성화지원사업만 해당)명을 반드시 기재

제5장

간접비 제도 개선방안



제5장 간접비 제도 개선방안

제1절 간접비 산출기준 개선방안

1. 정부출연(연) 분야 산출기준 개선방안

□ 출연(연)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대상기관 지정 기준

○ 현황 및 개선요구사항

- 현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에는 산출대상기관에서 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 외에 기타 비영리연구기관은 정부 연구개발비를 최근 3년간 연평균 50억 원 이상 지원 받은 경우에 산출대상기관에 해당됨
- 산업부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일부는 대상기준에 부합되지 못해 산출대상기관에 지정되지 못하고 있어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개선방안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국가연구 개발사업비가 연평균 50억이 되지 못하면 산출대상 기관이었다가 비대상기관으로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기관의 규모에 따라 대상기관이 지정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음.
- 정부출연 연구기관처럼 공익적 성격의 연구기관임을 감안하여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전 기관을 간접비 비율 산출 대상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2015년도 간접비 계상기준 산출기준 설정시 검토

□ 사업별 간접비 집행액 배분 기준

○ 현황 및 개선요구사항

- 현행 출연(연) 분야 간접비 세부 산출기준에는 기관 간접비 총집행액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집행액으로 배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배분하여 산출자료 제출

○ 개선방안

- 출연(연) 분야의 간접비 비율 산출시 사업별 간접비 집행액 배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적용함
 - 기관 간접비 총집행액을 산출하여 이중 출연금 간접비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외 사업들의 간접비 수입액 비율에 따라 배분
 - 민간연구소는 수행 사업들의 연구수익비율에 따라 배분가능
 - 연구개발 준비금, 이월금 등 개별항목별로 집행액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항목 집행액 인정
 - 간접비 수입액보다 지출액 초과시 초과 집행액을 인정하되, 현저하게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간접비에 대한 해당 연구기관의 합리적인 배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음

□ 추가소요, 특이사항 및 가감사항 세부기준

○ 현황 및 개선요구사항

- 현행 출연(연) 분야 간접비 세부 산출기준에는 신축건물에 대한 추가소요분 반영이 간접비 산출주기(2년)가 변경됨에 따라 적용기준이 불명확해짐
- 특이사항에서 경상경비 절감액, 청년인턴제 추진경비 등의 적용기준이 모호
- 참여제한의 감률 적용기준의 합리적 조정 필요(참여제한 1년, 2년, 3년, 4년, 5년 각각 1건씩 총 5건에 대한 총 감률은 1.4%이나, 5년 10건의 경우 1%밖에 감률되지 않으므로 불합리한 면이 있음)

○ 개선방안

- 신축건물에 대한 추가소요분 반영: 연구용 신축(증축) 건물에 한하여 완공일 이후 소요운영경비의 50%를 기관공통 지원경비로 인정
 - 완공일이 '13.1~6월인 경우 '13년 12월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소요운영경비의 50% 인정
 - '13.7~'14.11월인 경우 일괄 6개월분에 대한 소요운영경비의 50% 인정

- 정부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임차 건물을 신축 이전하는 경우 기존 임차면적 대비 증가된 신축면적만 인정
- 신축건물에 대한 소요 경비는 93천 원/m²을 기준(연구회 소관연구기관 '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기초)으로 하되, 정부 지원(38천 원/m², 40%)을 받는 시설은 55천 원/m² (60%)을 인정, 미지원되는 시설은 소요 경비 전액(93천 원/m²)을 인정

※ 출연금 지원여부 판단은 건설비 재원을 확인하여 판단

- 특이사항에서 경상경비 절감액: 전년도('12년) 계획 대비 절약된 경상경비의 70% 인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비율 만큼 인정)
- 청년인턴제 추진경비: '13년도 순수 증원된 인력 1인당 75만 원 인정
- 참여제한의 감률 적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안 검토 (본 절 “3. 참여제한 감률 적용기준 개선방안” 참조)

□ 간접비 비율 산출자료 작성에 대한 사전 설명회 요청

○ 현황 및 개선요구사항

- 간접비 비율 산출자료 작성시 작성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작성요령 및 적용기준에 대한 사전 설명회 필요

○ 개선방안

- 간접비 계상기준 산출방식에 대한 간접비산출소위원회 위원, 산출 대상기관 담당자 등의 관련 기준 공유를 위한 사전 설명회 개최 추진

2. 대학 분야 산출기준 개선방안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인정범위

○ 현황 및 개선요구사항

- 현행 대학 간접비 비율 산출 세부기준 상의 연구진흥경비 인정기준에서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의 불인정 항목이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 초과한 유지비”로 되어 있음. 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상에서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가능”의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간접비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인정범위 또한 전액 인정 요구

※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5항(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개정 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개정 후(2010.8.11.)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개선방안

- 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상에서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가능”의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간접비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인정범위 또한 전액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현행 대학 간접비 비율 산출 세부기준 상의 연구진흥경비 인정기준 불인정 항목 내용 수정 추진

□ 연구수익비율에서 교육수익 학비감면 인정범위

○ 현황 및 개선요구사항

- 학비 감면 관련, 결산기준이 아닌 고지서에 명시된 교내장학금만 부분 인정하여 교육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며, 결산서와 같은 공시자료가 아닌 담당자가 별도 구분 제출하는 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결산서 기준의 교내 장학금 전체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

○ 개선방안: 교육수익 산출시 세부기준 설정

- 연구수익비율 산정 관련 교육수익 산출시 ‘학비감면 차감’ 범위는 교내장학금 중 근로장학금 및 기금회계 교내장학금 전액을 제외한 금액을 인정
 - ‘학비감면 차감’은 선차감, 후지급에 무관하게 등록금 재원에서 지급된 감면액을 전액 인정함. 교내장학금 중 기금회계에서 지급된 교내장학금(등록금 재원이 아님으로 학비 감면이 아님)과 등록금회계 교내장학금 중 근로장학금(명칭이 장학금이기는 하나 서비스를 구매한 비용으로 인식됨) 두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인정함
- (당초 적용기준) ‘학비감면 차감’ 범위를 교내장학금 중 등록금고지서 발부 시 선차감(사전면제 또는 감액)된 금액만 인정

□ 가감사항 참여제한 기준

○ 현황 및 개선요구사항

- 대학별 수주 연구비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대학의 수주 연구비 규모가 클수록 참여제한 발생건수는 증가할 확률이 높고, 비율이 아닌 단순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감률을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 초래

○ 개선방안

- 참여제한의 감률 적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안 검토 (본 절 “3. 참여제한 감률 적용기준 개선방안” 참조)

□ 산학협력단 관리운영비 연구부문 인정 요구

○ 현황 및 개선요구사항

- 대학 간접비 비율 계산시 산학협력단 회계의 인건비는 연구부문으로 100% 간접비로 인정되며, 관리운영비는 공통부문으로 연구수익비율 해당액만큼 간접비로 인정받고 있음. 산학협력단 회계의 관리운영비도 인건비와 동일하게 연구부문으로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함

○ 개선방안

- 산학협력단 회계의 관리운영비도 인건비와 동일하게 연구부문으로 인정 검토

□ 공통부문 및 연구진흥경비 인정범위

○ 현황 및 개선요구사항

- 연구수익비율이 30%이상일 경우 총무팀을 공통부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총무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설정 하지 않고 있음
- 연구진흥경비의 경우 실험실운영지원비(시약·재료비·수용비 및 수수료(공공요금))를 인정 범위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대학측에서는 실험실운영지원비 전체를 연구진흥경비로 주장하고 있음. 시약·수수료·공공요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개선방안

- 연구수익비율이 30%이상일 경우 총무팀을 공통부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해석상으로는 총무행정인원만 총무팀으로 인정 가능한 것이나 대학의 조직도상으로는 기사, 미화원, 경비 등도 총무팀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규정 명확화 필요
- 연구진흥경비의 경우 실험실운영지원비(시약·재료비·수용비 및 수수료(공공요금))를 인정 범위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대학측에서는 실험실운영지원비 전체를 연구진흥경비로 주장하고 있음. 시약·수수료·공공요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할 필요성이 있음

□ LINC 사업 등 HRD 성격의 사업 연구수의 인정범위

○ 현황 및 개선요구사항

- 다수의 대학에서 HRD 성격의 사업과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을 연구수익 및 연구비에 포함하여 간접비 비율 산출함. LINC 사업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대학은 LINC 사업 관련 수익-비용을 미제거
- 세부기준에 따르면 “HRD성격의 사업(BK21, NURI,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특성화 지원사업만 해당)은 연구수익 인정항목에서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함

○ 개선방안

- LINC 사업은 현장실습, 취·창업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하는 등 HRD 성격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연구수익 및 연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
- 글로벌 IT인재활용지원사업, 지역인력양성사업 등 기타 인력양성사업도 연구수익 및 연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
- 세부기준 “HRD성격의 사업(BK21, NURI,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특성화지원사업만 해당)은 연구수익 인정항목에서 제외”라고 명시된 부분 수정 검토 필요

3. 공통기준 참여제한 감률 적용기준 개선방안

□ 현황 및 개선요구사항

- 기관별 수주 연구비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 요구
 - 기관의 수주 연구비 규모가 클수록 참여제한 발생건수는 증가할 확률이 높고, 비율이 아닌 단순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감률을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 초래
- 참여제한의 감률 적용기준의 합리적 조정 필요
 - 참여제한 기간이 동일한 건수가 4건 이상일 경우, 형평성 문제 발생(예를 들면, 참여제한 1년, 2년, 3년, 4년, 5년 각각 1건씩 총 5건에 대한 총 감률은 1.4%이나, 5년 10건의 경우 1%밖에 감률되지 않으므로 불합리한 사례 발생)

□ 개선방안

- 기관별 수주 연구비 규모를 고려하여 연구비 대비 건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간접비 제도 개선반 협의 검토 후 추진
- 참여제한의 감률 적용기준의 합리적 조정 추진
 - － 간접비 제도 개선반 협의 검토 후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 － 참여제한의 감률 적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안) 예시

참여제한 기간	기준	1건		2건		3건 이상	
		가중치	감률	가중치	감률	가중치	감률
1년	0.2%	0.5	0.10%p	0.7	0.14%p	1	0.20%p
2년	0.3%	0.5	0.15%p	0.7	0.21%p	1	0.30%p
3년	0.5%	0.5	0.25%p	0.7	0.35%p	1	0.50%p
4년	0.8%	0.5	0.40%p	0.7	0.56%p	1	0.80%p
5년	1.0%	0.5	0.50%p	0.7	0.70%p	1	1.00%p

- 참여제한 기간이 동일한 건수가 3건 이상인 경우, 4건부터는 해당 참여제한 기간의 감률을 1건부터 차례로 추가 적용
 - 예) 2년 8건일 경우, 0.30%(3건) + 0.30%(3건) + 0.21%(2건) = 0.81% 감률함
- 참여제한으로 인한 최대 감률은 2.80%로 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 2.80%까지만 감률함
 - 예) 5년 10건 이상일 경우, 1.00%(3건) + 1.00%(3건) + 1.00%(3건) + 0.50%(1건) = 3.50%, 따라서 최대 감률 2.80%만 감률

제2절 연구현장의 간접비 제도개선 요구 및 개선방안¹⁾

1. 간접비 사용용도 및 정산 규정 개선

□ 현황 및 개선요구사항

- **(간접비 사용용도 명확화)** 간접비 세목별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을 경우, 간접비 사용에 제약 요인(감사원 감사)으로 작용 우려
- **(간접비 정산면제의 명문화)** 간접비는 비용의 특성상 정산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미래부는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0조(집행잔액의 회수)에 간접비 정산면제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일부 부처의 경우 소관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간접비 정산 수행사례 발생

□ 개선방안

- **(간접비 사용용도 명확화)** 간접비 세목별 사용용도는 현행 유지
 - 다만,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에 기관공통지원경비 항목에 대하여 최소한의 불인정항목만 명시(학생장학금, 복리후생성경비, 업무추진비, 건물토지 구입비, 건축물신축 등)
- **(간접비 정산면제의 명문화)** 공동관리규정에 명시
 - “간접비는 정산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정산을 할 수 있다.”

2. 대학-출연(연) 간접비 비율 산정방식 개선

□ 현황 및 개선요구사항

- **(대학)** 출연(연) 등과 달리 간접비 비율 산출과정이 복잡하고 실태조사 부담 존재
- **(출연(연), 특정(연), 비영리기관)** 고정 간접비 비율 보다 낮은 기관 발생

1) [참고 3] 연구현장의 간접비 제도개선 수요조사 및 개선방안(「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내용 발췌)

□ 개선방안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를 대학, 출연(연) 등 모든 기관에 실시하고 최우수기관(S)에 대해서는 간접비 산출시 1% 인센티브 부여(기존 3% → 1%로 하향 조정)
- 출연(연) 등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비율 17%는 과다하므로 5%로 하향 조정하여 계상

3. 기타 사항

- 상기 개선 요구사항 외에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통합 요구,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간접비 대상기관 포함 요구 건은 중복 사항으로 생략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3] 연구현장의 간접비 제도개선 수요조사 및 개선방안” 첨부



참고 3

연구현장의 간접비 제도개선 수요조사 및 개선방안

- ▶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내용 발췌

1. 간접비 사용용도 및 정산 규정 개선

□ 추진배경

- 「공동관리규정」에서는 간접비의 정의 및 사용용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간접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체별 시각차**로 인해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해석차가 존재하며, 실 집행 시 보수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 「공동관리규정」[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간접비 사용용도 규정([붙임] 부처별 간접비 집행항목 참조)

** 정부(전문기관)는 실제 연구와 관련된 행정 및 시설지원경비, 연구자는 개별 연구 지원경비, 대학은 연구개발 투입에 대한 원가보전경비, 감사원은 연구개발비로 인식

□ 문제점

- **(간접비 사용용도 명확화)** 간접비 세목별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을 경우, 간접비 사용에 제약 요인(감사원 감사)으로 작용 우려
 - 연구지원비 중 기관공통지원경비에 대해서는 최소한 불인정 기준을 연구비관리표준메뉴얼에 반영 필요
- **(간접비 정산면제의 명문화)** 간접비는 비용의 특성상 정산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 함으로 미래부는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0조(집행잔액의 회수)에 간접비 정산면제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일부 부처의 경우 소관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간접비 정산 수행사례 발생
 - 모든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동관리규정에 간접비 정산면제를 명문화하되 부처별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정산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반영 필요

□ 개선방안

- (간접비 사용용도 명확화) 간접비 세목별 사용용도는 현행 유지
 - 다만,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에 기관공통지원경비 항목에 대하여 최소한의 불인정항목만 명시(학생장학금, 복리후생성경비, 업무추진비, 건물·토지 구입비, 건축물신축 등)
- (간접비 정산면제의 명문화) 공동관리규정에 명시
 - “간접비는 정산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정산을 할 수 있다”

2. 대학-출연(연) 간접비 비율 산정방식 개선

□ 추진배경

- (대학) ‘연구비중앙관리 실태조사’를 받고 등급별 간접비 비율 적용

등급(점수)	A(100~90)	B(80~90)	C(80~70)	D(70~0)	미신청
적용비율	20%	15%	10%	5%	3%

- A, B 등급을 받은 대학 중 ‘원가계산방식’의 간접비 비율 실사 후 ‘실사율’에 따른 간접비 비율 적용

실사율	40% 이상	35% 이상	30% 이상	28% 이상	28% 미만
적용비율	31%	30%	29%	28%	실사율

- (출연(연), 특정(연), 비영리연구기관) ‘원가계산방식’으로 간접비 비율 산출(약 10~40% 범위)
 - * 비영리기관은 최근3년간 국가R&D사업비가 연평균 50억 원 이상('13년 15개 기관)
 - * [붙임] 비영리기관 연평균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참조

○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50억 원 미만) 고정 간접비 비율 적용(17%)

* 영리기관은 고정 간접비 비율 적용(5%)

□ 문제점

○ (대학) 출연(연) 등과 달리 간접비 비율 산출과정이 복잡하고 실태조사 부담 존재

— 실태조사가 우선 적용되어 17%가 적용되지 못하고 영리기관보다도 적은 3%까지 적용

* 12년 고시비율: 5% 35개, 10% 29개, 15% 30개, 20% 이상 100개

○ (출연(연), 특정(연), 비영리기관) 고정 간접비 비율 보다 적은 기관 발생

* 27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17% 이하

□ 개선방안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를 대학, 출연(연) 등 모든 기관에 실시하고 최우수기관(S)에 대해서는 간접비 산출시 1% 인센티브 부여(기존 3% → 1%로 하향 조정)

— 대학은 기존등급인 A-B-C-D를 S-A-B-C-D로 등급을 조정하여 최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출연(연)은 최우수기관만 선정하여 인센티브 부여

* 간접비 비율 산출시 연구비인증기관에 대한 3% 인센티브 부여는 당초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출할 당시('07~'09년) 적용비율인 바, '10년부터는 직접비(인건비 포함)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으로 3% 가율은 과다함으로 1% 정도로 하향 조정함이 바람직함

○ 출연(연) 등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비율 17%는 과다함으로 5%로 하향 조정하여 계상

*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최근 3년(10~12년)간 원가계산에 의한 간접비 비율이 5%에 근접하는 기관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의 경우 최하위 D등급이 5%이므로 출연(연), 대학 등 산출 대상기관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5%로 조정 필요

3.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통합

□ 추진배경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 목적: 산·학·연 연구주체들의 전반적인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역량 향상으로 국가 R&D 투자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현황: '07년 제도 도입 이후 43개 기관 신청, 19개 기관 인증 받음
 - * '13. 2월 현재 인증기관은 13개 기관(출연(연) 8, 대학 5)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 목적: 연구비 중앙관리 체제 구축을 통해 자율적인 연구비 관리능력 향상, 투명성 제고 및 각 연구기관의 간접비율 차등 적용
- 현황: '94년 도입 이후 매년 기관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등급 부여

연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계
2010년	72(35.3%)	53(26.0%)	27(13.2%)	52(25.5%)	204개 기관
2011년	78(47.6%)	44(26.8%)	32(19.5%)	10(6.1%)	164개 기관
2012년	77(40.52%)	41(21.58%)	25(13.16%)	47(24.74%)	190개 기관

※ 인증제와 중앙관리 실태조사 비교

구 분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근거	○ 「공동관리규정」 제14조	○ 「공동관리규정」 제12조
목적	○ 연구기관 연구비관리능력 수준 제고로 연구비관리체계 상향 표준화 유도	○ 투명하고 효율적인 연구비관리 ○ 기관의 당해년도 간접비 계상기준 반영
대상	○ 신청한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대학 등 연구 기관

구 분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영역 평가, 인증 여부 결정 - 내부통제시스템(100점) - 연구관리 인프라(100점) - 연구비 집행절차(100점) * 각 영역별 85점 이상 득점하고, 필수지표 60% 이상 득점시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영역 심사, 등급 부여 - 연구관리인프라 및 내부통제제도(55점) - 연구비관리시스템(45점) * A(90점 이상), B(89점~80점 이상), C(79점~70점 이상), D(70점 미만)
우대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정산면제 ○ 간접비 계상비율 상향조정(3%이내) ○ 중앙관리실태조사 "A"등급 부여 ○ 기관평가 시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별 간접비율 부여 - A : 20% / B : 15% / C : 10% / D : 5%, 미신청 3% ○ B등급 이상 대학 - 대학분야 원가계산 산출 신청 자격 부여
간접비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비율 추가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비율과 연계
실사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신청기관 실사(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관 중 일부(15~20%)

□ 문제점

○ (인증제)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유사·중복에 따른 통합검토 등

- (중복부분 통합) 인증제와 중앙관리실태조사의 중복부분에 대한 **통합 방안**과 연구자에게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국정감사, '11.3)
- (인증제도강화) 연구비관리체계 부실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인증되지 않도록 **인증제도 강화**(감사원, '11.6)
- (사용실적보고) 사용실적 보고면제 등 정산면제규정을 삭제하여 **예산 부정 집행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 강구(권익위, '11.7)
- (유사·중복)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평가지표 유사·중복 논란(국회)

○ (중앙관리실태조사) 서면위주 평가 및 연구비관리 능력 상향 유도 필요

- (평가수준) 현장평가는 15~20%, B등급 이상이 전체의 절반 이상(62.10%)을 차지하여 평가 변별력 미흡('12년 기준)
- (연구비관리능력향상) 서면위주 및 현장평가 미 실시 기관에 대한 연구비 관리능력 상향 유도 미흡
- (유사중복) 인증제 평가지표 유사·중복 논란

□ 개선방안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는 폐지하고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를 출연기관을 포함하여 확대실시하고 그 결과를 간접비 비율 산출시 반영
 - 실태조사 결과 최우수기관은 간접비 비율 산출 시 1% 가산
-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공동관리 규정에 반영
 - 대학은 일부 및 출연(연), 특정(연), 비영리연구기관은 모든 기관에 대하여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를 2014년에 시범실시하여 평가지표 등 개선사항을 도출보완하여 2015년 간접비 비율 산출 시 반영

※ 참고: 평가지표(안) 심층 현장평가를 고려하여 12개 평가지표, 48개 세부평가지표 도출

평가지표	세부평가 지표수	배점	지표				선정사유
			공통	특성	서면	현장	
① 연구비 집행 사전통제 시스템 구축·운영	5	10	○		○	○	연구비 집행 오류 최소화
② 자체감사 체계적 실시	4	11	○		○	○	연구비 오·남용, 부정 집행 사전 예방 및 사후적 시정 조치
③ 연구관리 조직 및 인력	6	10	○		○	○	연구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은 필수
④ 연구관리 교육	2	5	○		○		연구관리인력의 직무 전문성 제고, 연구비 집행 오류의 사전예방 효과 제고
⑤ 연구관리규정-매뉴얼 구비 및 개정	3	6	○		○		효율적인 연구관리의 가이드 제공 필요
⑥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5	11	○		○	○	정보를 DB화하고 통계처리 함으로써 정보의 이용과 투명성을 유지
⑦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 적정성	2	5	○		○	○	연구관리부서에서 연구자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반영 하는 제도 필요
⑧ 인건비 집행관리	4(5)	10		○	○	○	「공동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인건비” 집행관리로 통합
⑨ 연구장비·재료비 집행	7	12	○		○	○	부정집행의 대표적 사례이며, 투명한 구매절차가 필요
⑩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 추진비 집행	4	8	○		○	○	부적정 집행 다수 사례 발생으로 인해 투명한 집행절차 확인 필요
⑪ 연구수당 집행	3	6	○		○	○	참여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체계 마련과 공정한 보상을 통한 사기진작
⑫ 간접비 집행	3	6	○		○	○	무분별한 간접비 집행 차단 필요
계(12)	48	100					

※ ()대학 세부평가지표수임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과제참여 규제 완화(간접비 대상기관 포함)

□ 추진배경

-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설립
 - － (법상역할) 시험·평가·장비 기술 지원,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연구시설 및 기술정보 제공, 국제 산업기술협력, 기술개발 성과의 기업이전 등
- 간접비 원가산출 대상기관은 대학*, 정부출연(연), 특정(연), 비영리 연구기관**
 - * 중앙관리 실태조사결과 B등급이상 중 원가산출을 신청한 기관
 - ** 정부 연구개발비를 최근 3년간 연평균 50억 원 이상 지원받은 기관 중 원가산출을 신청한 기관

□ 문제점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研) 대부분은 간접비 비율 산출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해 실제 간접비 비율을 인정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실정
 - － 2013년도 간접비 비율 산출 대상(국가연구개발비 연평균 50억 이상 지원받은 비영리 연구기관)인 전자부품研, 자동차부품研, 섬유개발研, DYETEC研, 광기술원을 제외한 9개 전문研은 간접비율 산출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간접비 비율 계상기준에 따라 최소 비율(17%)만 인정
 - － 現 간접비 비율 계상기준으로는 일부 전문研만 산출대상기관으로 지정되게 되므로 전문研 기관 간 형평성 논란
 - － 전문研의 대부분은 17%가 아닌 실제 간접비 비율을 인정받기를 원하며,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쏠 전문研을 간접비 비율 산출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 요청 중

- 간접비율 산출 대상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정부 연구개발비를 최근 3년간 연평균 50억 원 이상 지원 받은 비영리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간접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인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

□ 개선방안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최근 3년간 연평균 50억 원 이상인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간접비 산출 대상기관이 인정되므로 2015년도 간접비산출위원회 심의 안전에 상정하여 간접비 비율 산출 대상기관으로 포함 추진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비가 연평균 50억이 되지 못하면 산출대상 기관이었다가 비대상기관으로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기관의 규모에 따라 대상기관이 지정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음. 정부출연연구기관처럼 공익적 성격의 연구기관임을 감안하여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전 기관을 간접비 비율 산출 대상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2015년도 간접비 계상기준 산출기준 설정시 검토

[붙임 2] 부처별 간접비 집행항목

사용용도 및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3과 동일)	산업기술혁신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3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1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 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연구개발능력 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능력성과급(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항목없음	중소·중견기업이 신규채용(해당연도 시작 6개월 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항목없음	항목없음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 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

사용용도 및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3과 동일)	산업기술혁신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3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1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연구보안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연구윤리 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연구개발 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리서치펠로우 인건비 항목 없음 그 외규정은 관리규정과 동일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사용용도 및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3과 동일)	산업기술혁신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3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1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 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기술창업 출원·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제품 및 기술인증, 기술자료임치,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회계감사비용 등에 필요한 비용	항목없음	항목없음	제품 및 기술인증, 기술자료임치(2년간 임치에 소요되는 비용),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회계감사비용 등에 필요한 비용

제6장

결 론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 실태조사 실시 및 최종등급 결정

○ '13년도 대학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실시 결과, 총 198개 대학 최종등급 결정 통보 (미래창조과학부, 9.11)

— A등급 95개(연구관리 우수 인증기관 5개 대학 포함), B등급 38개, C등급 25개, D등급 40개 대학

□ 실태조사 제도개선 요구 사항 검토

○ 간접비 비율 산출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방안 검토

○ 서울, 대전 지역 위주의 교육(설명회) 시행 방법 개선을 위해 온라인 동영상 제공 등 개선 방안 검토

○ 대학 산학협력단 예산(또는 연구수주) 규모에 따라 현행 단일 평가항목 개선 검토

○ 지방 소규모 대학 산학협력단의 운영여건을 감안, 실정에 맞는 평가항목 추가 검토

○ 연구관리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컨설팅 풀, 연구기자재 등 공동 자원 활용을 위한 제도 구축 방안 검토 필요

□ 실태조사 지표 개선방안 검토

○ 실태조사 지표 2개년 비교분석 결과, 삭제 6건, 강화 6건, 보완 5건의 평가 세부지표 개선(안) 구성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통합 방안 검토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유사중복에 따른 통합 요구 증가
 -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의 서면위주 평가 및 현장평가 미 실시 기관에 대한 연구비 관리능력 상향 유도 필요
 - 유사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부담 가중 해소 및 양 제도 통합을 통한 연구비관리체계 재정립 필요
 - 개선방안
 -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와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의 유사·중복에 따른 통합검토 필요
 -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는 폐지하며,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를 출연기관을 포함하여 확대실시하고, 그 결과를 간접비 비율 산출시 반영
 - －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를 공동관리 규정에 반영
 - － ’14년도 통합 실태조사 시범실시 후 평가지표 등 개선사항 도출, 보완하여 ’15년 시행 및 간접비 비율 산출시 반영 추진

제2절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정 및 산출

□ 출연(연)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

○ 출연(연) 분야 산출기준 설정

- 신축건물에 대한 간접비 비율 추가 인정의 구체적 기준 제시
- 특이사항 인정부분 기준 제시: 전년대비 절약된 경상경비의 70%를 인정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율만큼만 인정

○ 산출대상 기관 54개 기관 중 산출 비대상기관 5개 기관을 제외한 49개 기관에 대한 간접비 비율 산출(8.26~8.30) 및 고시(미래창조과학부, 12.27)

○ 간접비 비율 산출 비대상기관 조치

- 간접비 비율 산출대상 54개 기관 중 기관 성격상 간접비 비율 산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4개 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공인회계감사 미수감 기관 1개 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산출비대상기관으로 처리

□ 대학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

○ 대학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정

- 교육수익 산출시 세부기준 검토 및 명확화

○ 원가계산에 의한 간접비 비율 적용 희망대학 원가확인 및 현장점검(10.28~11.15)

-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B등급 이상 대학 중 원가계산 희망대학 총 69개 대학(A등급 66개, B등급 3개 대학)의 간접비 비율 산출

○ 원가계산 대학 69개, 실태조사 등급 적용 대학 127개, 총 196개 대학 간접비 비율 고시(미래창조과학부, 12.27)

제3절 간접비 제도 개선

□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개선

○ 출연(연) 분야

- 출연(연) 분야 산출기준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산출대상기관 추가 등 산출대상기관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한 검토 필요
- 출연(연) 분야 사업별 간접비 집행액 배분 기준 설정
- 신축건물에 대한 간접비 비율 추가 인정의 구체적 기준 제시

○ 대학 분야

- 대학 분야 산출기준에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인정범위를 현행 규정에 맞게 “최초 특허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가능” 삭제 검토 필요
- 교육수의 산출시 세부기준 검토 및 명확화
- 산학협력단 관리운영비 연구부문 인정 검토 필요
- 공통부문에서 연구수익비율 30%이상일 경우 총무인사 및 주거운영부서 인건비 인정범위 명확화 검토 필요
- 연구진흥경비의 실험실운영지원비(시약·재료비·수용비 및 수수료(공공요금))를 인정범위에 대한 규정 명확화 검토 필요
- LINC 사업 등 HRD 성격의 사업 연구수의 인정범위 검토 필요

○ 공통기준 참여제한 감률 적용기준 합리적 조정안 검토

- 기관별 연구비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참여제한 건수별 획일적 감률 적용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참여제한 건수가 다수일 경우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 개선을 위한 감률 적용기준 검토 필요

□ 기타 개선 요구사항

○ 간접비 비율 산정방식 개선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통합 방안 검토 후 통합된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를 대학, 출연(연) 등 모든 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최우수 기관에 대해 간접비 비율 산출시 1%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비율 17%를 5%로 하향 조정 방안 검토 필요

○ 간접비 계상기준 산출방식에 대한 간접비산출소위원회 위원, 산출 대상기관 담당자 등의 관련 기준 공유를 위한 사전 설명회 등 필요

주 의

1. 이 보고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에 관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